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전공

오 옥 만

2019년 8월

제주지역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양 덕 순

오 옥 만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오옥만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9년 8월

A study to strengthen legislative activities of
female members of Jeju Provincial Assembly
– focusing on Jeju Provincial Assembly

Oh Ok Man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Duk-Soon)

This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19.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3
3. 연구체계	3
II. 이론적 고찰	5
제 1 절 지방의회의 관한 고찰	5
1. 지방자치의 개념	5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7
3. 지방의회의 의의	9
제 2 절 여성의 정치 참여	11
1. 여성 정치참여의 개념	11
2.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12
3. 여성 정치참여 역사	14
제 3 절 해외 여성의 정치 참여	19
1. 외국 지방자치에서의 여성의 참여	19
2. 프랑스의 여성정치 참여	20
4. 독일 여성정치 참여	23
제 4 절 선행연구	25
III. 여성의원 의정활동 실태 분석 및 평가	28
제 1 절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 여성의원 참여현황	28
1.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입후보 당선자 현황	28
2. 제주특별자치도 역대 여성의원 일반현황	29

제 2 절	여성의원 의정활동 분석	31
1.	제주특별자치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가결현황	33
2.	여성도위원 상임위원회 배정 현황	37
3.	여성도위원 상임위원회별 세부구성현황	38
제 3 절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	42
1.	제주특별자치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가결현황	44
IV.	모형설정 및 조사분석	54
제 1 절	조사설계	54
1.	연구 분석틀 설정	54
2.	변수설정 및 설문 구성	55
제 2 절	연구방법	56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56
2.	분석방법	56
제 3 절	결과분석	56
1.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56
2.	정치 입문 동기	57
3.	의정활동 관련	60
4.	여성 정치참여 관련	67
V.	결 론	72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72
제 2 절	시사점	74
참고문헌	78
<부 록>	설문지	84

표 차례

<표 II-1> 우리나라 지방선거 현황	8
<표 II-2> 여성할당제 형태	17
<표 II-3> 프랑스 선거 및 선거구, 의석배분, 할당방식	22
<표 II-4> 독일 정당의 여성할당제	24
<표 III-1> 도의회 의원 입후보·당선자 비교	29
<표 III-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당선자 현황	30
<표 III-3>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여성 도의원 분야별 발의 조례안	32
<표 III-4>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가결현황	33
<표 III-5>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가결현황	34
<표 III-6>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가결현황	35
<표 III-7>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환경도시위원회 조례안 가결현황	35
<표 III-8>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문화관광위원회 조례안 가결현황	36
<표 III-9>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조례안 가결현황	36
<표 III-10>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교육위원회 조례안 가결현황	37
<표 III-11> 2006년 특별 자치도 출범이후 여성도의원 상임위원회 배정현황	38
<표 III-12>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구성현황	39
<표 III-13>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구성현황	39
<표 III-14>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구성현황	40
<표 III-15>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환경도시위원회 조례안 구성현황	40
<표 III-16>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문화관광위원회 조례안 구성현황	41
<표 III-17>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조례안 구성현황	41
<표 III-18>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교육위원회 조례안 구성현황	42
<표 III-19>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조례안 발의현황	43
<표 III-20>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남·여성 의원 대표발의 현황	44
<표 III-21> 제주특별자치도 8대 여성의원 조례안 가결현황	44

<표 III-22> 제주특별자치도 8대 여성의원 대표발의 세부현황	45
<표 III-23> 제주특별자치도 9대 여성의원 조례안 가결현황	46
<표 III-24> 제주특별자치도 9대 여성의원 대표발의 세부현황	47
<표 III-25> 제주특별자치도 10대 여성의원 조례안 가결현황	49
<표 III-26> 제주특별자치도 10대 여성의원 대표발의 세부현황	50
<표 IV-1> 변수 구성	55
<표 IV-2> 응답자 인구 통계적 특성	57
<표 IV-3> 의회 진출 전 정치활동 여부	58
<표 IV-4> 의회 진출 전 정치활동 유형	58
<표 IV-5> 정치 입문 동기	59
<표 IV-6> 지방정치 결심 후 가장 먼저 준비 한 사항	59
<표 IV-7> 지방정치 활동 권유자 여부	60
<표 IV-8> 최초 배정된 상임위원회	60
<표 IV-9>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 공정 여부	61
<표 IV-10>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 불공정 이유	61
<표 IV-11>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 불공정 이유	62
<표 IV-12> 희망 상임위원회 배정 이유	62
<표 IV-13> 의정 활동 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분야 여부(우선순위)	63
<표 IV-14> 의정 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노력 여부	64
<표 IV-15> 의정 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높은 성과 여부	65
<표 IV-16> 의정 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여성의원(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여부	66
<표 IV-17> 의정 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여성의원 강화 사항 여부	67
<표 IV-18> 여성의원 증가 정치발전 기여 여부	67
<표 IV-19> 여성의원 증가 긍정적인 이유	68
<표 IV-20> 여성 정치참여 저해 요인(복수응답)	69
<표 IV-21> 여성의원 증가 정치발전 기여 여부	69
<표 IV-22> 여성할당제 강화 여부	70
<표 IV-23>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화 동의 여부	70
<표 IV-24> 지방의회 남녀 동수 동의 여부	71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체계	4
<그림 II-1>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체간 개념도	6
<그림 IV-1> 연구의 분석틀	54

제주지역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중심으로 -

1991년 지방자치체 실시 28년 여년 흐르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권력개념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일상생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정치로서의 전환 기회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방의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체 의결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회가 의결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현재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으로 타 광역의회와 비교하여 의회의 권한과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지방의회 중요성에 비하여 여성의 참여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 의정활동 역량 수준을 살펴보고 여성의원 의정활동의 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성의원과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8대·9대·10대 의회 조례안 남·여 의원 대표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8대 남성 1인당 3.7건, 여성 1인당 3건, 제9대 남성 1인당 5.8건, 여성 5.8건, 제10대 남성 1인당 4.4건, 여성 9.7건으로 여성의원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원을 대상으로 정치입문 동기, 의정활동 사항, 여성 정치참여 사항에 대해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의원들의 지방정치 입문 동기로는 83.3%(15명)가 지방정치 입문 동기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입문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방정치 활동 결심 후 가장 먼저 준비한 사항으로는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원들은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에 대해서 66.7%(12명)가 배정 방식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의정활동시 남성의원보다 노력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 등 입법기능(평균 4.33점), 예·결산 심의(평균 4.33점)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의원보다 높은 성과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 등 입법기능(평균 4.22점), 예·결산 심의(평균 4.22점) 등 성과가 높았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의원보다 여성의원(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는 꼼꼼한 지역 현안 발굴을 통한 입법활동(평균 4점), 세심한 이미지로 주민들과의 접촉 용이(평균 4.11점) 등이 강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은 첫째, 여성들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돌봄노동의 모습이 공익을 위한 정치발전에 발휘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선거시기 마다 올바른 여성정책의 실현 또는 유권자 교육, 여성후보를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여성의 참여는 현격히 떨어지며, 여성의 참여와 할당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여성의 당내 대표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정당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여성의원과 후보 지망생, 젊은 예비정치인들 간의 교류와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의정활동의 경험이 제대로 축적되고 기록되며 여성정치인들이 제대로 현실정치에 뛰어 들 수 있도록 여성의원들의 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주제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 의정활동, 여성 지위, 협력네트워크

I. 서론

제 1 절 연구 목적

1991년 지방자치체 실시 28년 여년 흐르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권력개념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일상생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정치로서의 전환 기회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염미경, 1997).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집행기관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분권시대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체 의결기관이며,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회가 의결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현재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지역사회 갈등에 대한 조정자 역할, 주민의 민원 해결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는 전국최초 주민투표¹⁾를 통해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기존 4개 시군의회(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가 폐지되고 광역의회로 출범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타 광역의회와 비교하여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례(의원정수, 선거구 특례,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제도 도입,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1)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2005년 7월 27일)

구분	기초자치단체 폐지 찬성율	기초자치단체 폐지 반대율	투표율
제주시	64.5%	35.5%	40.1%
북제주군	57.2%	42.8%	42.2%
서귀포시	43.6%	56.4%	34.2%
남제주군	45.1%	54.9%	40.1%
제주도 전체	57.0%	43.0%	36.7%

자료: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조사권, 인사청문 실시권)등 권한과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중요성에 반하여 여성의 참여는 아직 미흡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8대(2006년)·9대(2010년)·10대(2014년)의회를 살펴보면 제8대의 경우 전체 지역구 입후보자는 108명으로 남성 입후보자 104명, 여성 입후보자 4명이며, 이중 당선자는 29명으로 모두 남성이었다. 제9대의 경우 전체 입후보자 75명 중 남성 입후보자 70명, 여성 입후보자 5명이며, 이 중 당선자는 29명으로 모두 남성이었다. 제10대의 경우도 전체 80명 중 남성 입후보자 72명, 여성 입후보자 8명으로 남성의 수가 매우 높으며, 당선자는 29명 중 남성 27명, 여성 2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최초 여성의원 지역구 당선자가 배출되었다.

지방정치가 주민과 함께 하는 일상적인 생활정치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도덕성과 공약 실천의 신뢰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처리에 대한 반응성 측면에서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리서치앤서치, 2006) 이렇듯 여성의 의정활동 능력은 실제적으로 남성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비례대표로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시 선출직에 대한 부담으로 출마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비교를 통해 여성의원 의정활동 역량 수준을 살펴보고 여성의원 의정활동의 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을 남성의원과 여성의원을 비교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문헌 연구와 의정활동 실태 평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의 연령, 정당활동 여부,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 여부, 학력, 주요 경력 등을 분석하고, 의원 발의 조례 등을 검토하여 남성의원과 여성의

원의 의정활동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여성위원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제주도내 전현직 여성의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을 남성위원과 여성위원을 비교를 통해 여성위원의 의정활동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문헌적 연구방법으로는 지방의회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여성정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선행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여성 의정활동 강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실증적 연구로는 의회의 남성위원과 여성위원의 의정활동을 비교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 중심으로 각 요인 별 분석을 실시한다.

3. 연구체계

본 연구의 연구체계는 <그림 I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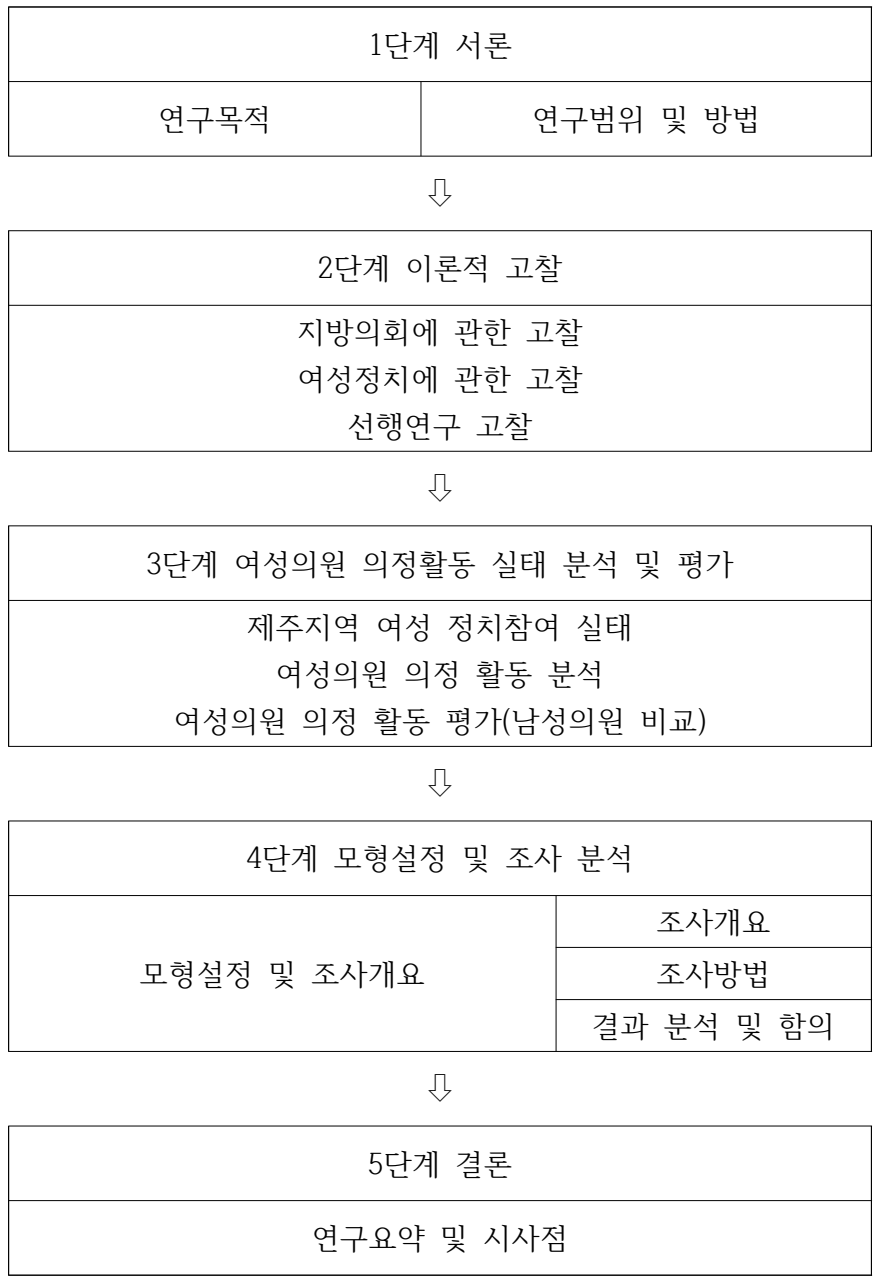
제 1단계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체계를 제시하였다.

제 2단계에서는 이론적 고찰 부문으로 지방의회에 관한 고찰, 여성정치에 관한 고찰, 선행연구 고찰을 제시한다.

제 3단계에서는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 실태, 여성의원 의정활동 분석,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제시한다.

제 4단계에서는 제 2단계에서 연구된 이론을 바탕으로 모형설정 및 조사개요를 구성하였으며, 실증분석으로 연구모형에 따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의 함의로 이루어진다.

제 5단계에서는 결론으로 연구의 요약,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림 I -1> 연구체계

II. 이론적 고찰

제 1 절 지방의회의 관한 고찰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의 책임 하에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한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에 의해서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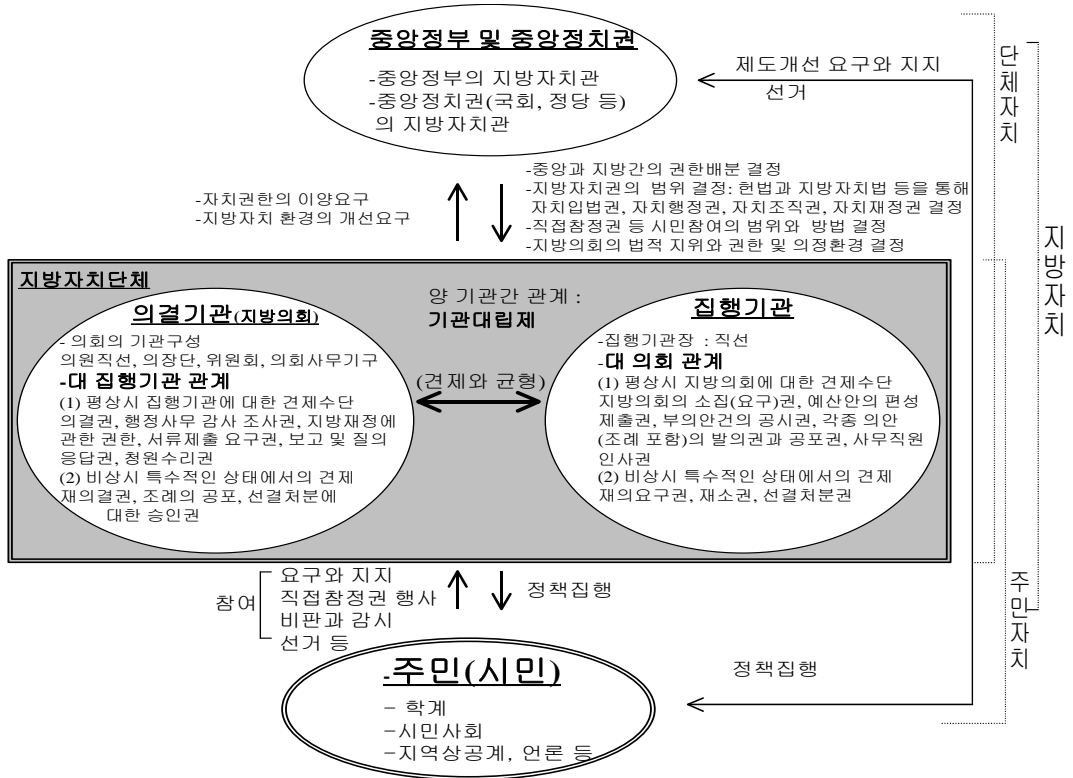
자치란 말은 그대로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즉 다스림의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1985년 유럽평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기본정신을 천명하기 위해 제시한 유럽지방자치헌장을 살펴보면 첫째, 자치권능의 관한 문제로 지방자치는 자치사무와 자치권 그리고 자치능력을 바탕으로 성립됨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자치권 행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성립된 자치정부에 의해 또는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현상임을 명기하고 있다. 셋째, 국가와의관계에 관한 문제로 지방자치는 국가체계를 떠나 존재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김병준, 201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여 그 지역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그 지방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 주민들의 직접 선출한 명예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민이 위임하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 공법인(公法人)인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자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 사무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지방 자치단체를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욕구를 적절히 수용시킴

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의결하고, 지방행정기관은 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걸치게 된다. 이는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말할 수 있다(이기우, 199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그리고 시민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고 제도의 미비로 시민의 지방정치에 참여기능이 약하고, 지방의회와 시민간의 연계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체간 개념도

자료: 송광태,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portal.changwon.ac.kr.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첫째, 건국이전의 지방자치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지방자치를 말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의 지방자치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15세기 후반까지 공식적인 행정기구로 제도화 된 향청이 그것이다. 향청은 일종의 자문기구로 오늘날의 지방의회의 기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주요 지배세력인 양반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단점은 있었다. 그리고 일종이 도덕적 규약의 성격 가지고 있는 향약이 있었다. 향약이 높이평가 되고 있는 점은 일정한 지역에 자치법규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향약을 시행기 위해서는 관리요원을 두는 등 일종의 조직체계를 갖추 있다는 점에서 지방 자치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일제 강점기의 지방자치이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지방자치는 통감부시설부터 시작하였다. 재무서를 설치하고 지방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둔 것이 한 예이다. 이후 1920년대 말까지 평의회와 협의회제도가 운영되었고, 1930년 들어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모방한 관치적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화되었다. 이는 임명제로 운영되던 일반면의 협의회 위원이 선출직으로 전화되고, 읍과 부의 협의회는 의결권을 가지는 읍회, 부회로 개편되고 도에도 도회를 설치하여 지방의회의구조로서 모양새를 가주고 있었다.

셋째, 미군정기의 지방자치이다. 이는 일본이 패망과 동시 전국 각 지역에서 인민위원회, 노동자위원회, 자주관리위원회 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전국단위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가 지역단위 조직을 설립하면서 인민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자치조직망을 만들어가기도 하였다. 이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1946년 3월 군정법령 제60호를 통해 해방이후 해체되었던 도회, 읍회, 면 협의회 등을 공식적으로 해산하고 각 지방의 행정청을 군정청의 지위를 받는 것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를 목표로 서울특별시 헌장을 만들어 시의 주요관리를 민선으로 선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 이어 '남조선입법의원'을 설치하여 지방자치조직 법안을 만들어 군정법령 126호를 통해 지방의 주요 관리와 지방위원의 주민직선으로 선출할 것을 규정하기도 하였

다. 그러나 이후 동서 냉전의 틀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지방관리 임명과정에서 친일세력들이 기용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넷째, 제1·2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이다. 1948년에 만들어진 제1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의 실시를 규정하였다. 이후 이승만 정부는 치안상태를 이유로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부산에 임시수도를 정하고 1952년 1월 정·부통령직선제와 양원제 실시 개헌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 의원선거가 실시된다. 그리고 5월 10일 도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여권의 압도적인 승리가 된다. 제2공화국의 4.19혁명 이후 개정된 헌법에서는 지방자치 실시에 큰 무게를 두었다. 그리고 1960년 12월 12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6개월 뒤 일어난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군사정권이 만들어 지방의회를 해산하게 된다.

다섯째,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과 지방자치의 부활이다. 이는 1987년 6월 10일 전두환 정권의 군부독재에 맞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27년간의 군부 독재 시대가 끝나고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 군부독재시절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개정 헌법에 따라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하여 1991년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99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체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다(김병준, 2010). 이는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우리나라 지방선거 현황

구분	내용
1949년 7월	지방자치법 제정
1952년 4월~5월	제1차 지방선거(도·시·읍·면의원)
1956년 8월	제2차 지방선거(시·읍·면장, 서울시·도·시·읍·면의원)
1960년 4월	4.19혁명
1960년 12월	제3차 지방선거(서울시장·도시자, 시·읍·면장 및 의원)
1961년 5월	5.16군사정변, 지방선거 중단
1972년 12월	7차 개선, 통일까지 지방의회 구성 유보
1980년 10월	8차 개헌, 재정자립도 이유 지방의회 구성 유보

1984년 10월	김영삼 단식, 정부 정국타개 차원 지방자치 준비 착수
1987년 6월	노태후 6.29선언, 지방자치 천명
1988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야3당 주도, 기초선거는 1989년 말, 광역선거는 1990년 말 실시하기로, 노태우대통령 거부)
1989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지방의원선거는 1990년 6월 30일 이내, 단체장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
1990년 1월	3당 합당, 지방선거 연기
1990년 12월	김대중 단식, 지방자치법 개정(지방의원선거는 1991년 6월30일 이내, 단체장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
1991년 3월	시·군·구의원(기초의회 의원)선거 실시
1991년 6월	시·도의원(광역의회 의원)선거 실시
1992년 1월	노태우대통령, 단체장 선거 연기 발표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4대 지방동시선거를 1995년 6월 27일 실시)
1995년 6월	제4대 지방동시 선거 실시
1998년 6월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2002년 6월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2006년 5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지방분권 실시)
2010년 6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2014년 6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2018년 6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자료: 최명규(2010) “ 지방의회 출범 20주년 회고”를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재작성함.

3.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의회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을 말한다. [헌법]제8장 지방자치 규정 중 제11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 전체의 이익을대변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각 지방의회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정수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

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지방의회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방의회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지방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이다. 주민대표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주민들이 선출하는 대표기관이다. 이는 대의제의 원리에 근거를 둔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결정한 의사는 주민의 의사이다. 지방의회를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명문화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을 주민의 대표자로 의미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기관이고 민주주의 상징이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시점은 1995년 7월 1일 이후 간접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적인 통치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말할 수 있다. 본래 지방자치의 이상향은 법적으로 평등한 지역주민들의 총의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의사가 결정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규모와 주민의 수 등에 비추어 불가능한 점이 많아 주민의 총의를 대신할 수 있는 주민대표기관으로 의회를 구성하여 그 의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자치운영에 반영하는 간접민주제가 보편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비판·견제·감시의 기능이 있다. 또한 공공사무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능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 주민소송제, 감사청구권, 주민투표제, 주민소환 등을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 2 절 여성의 정치참여

1. 여성 정치참여의 개념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고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참여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속에서 정치참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어떤 정부나 정치권력도 대중의 지지 없이는 지탱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의 정치참여는 정부를 형성하고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신정현, 2000).

정치참여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리를 살펴보면 Verba & Nie(1978)는 정치참여를 “시민의 정부 관리를 선출하거나 이들의 결정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부 관리를 선출하고 그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Weiner(1971)은 광의의 의미로 정치참여는 조직화된 것이든 비 조직화된 것이든, 지속적이거나 혹은 산발적이거나,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혹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그 과정들의 성공적이거나 그렇지 못하든 간에 지역적 수준 및 전국적인 수준에서 공공정책, 공무행정의 선택과 정치지도자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모든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오늘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김경애(1998)는 남성위주의 정치환경에서 여성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여성 공천할당제는 여성이 정치참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서 정치적 신념이 올바른 여성과 사회 및 여성문제 등의 인식이 투철한 여성들이 당선될 수 있는 능력위주의 선거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김민정(2004)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고, 여성이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정치가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는 것부터 의회나 행정부에서 결정·집행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들이 국가·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도자를 직·간접적으로 선출하며 공동정책을 형성하는데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 의원에 입후보, 참정권 행사, 정당 활동, 시민단체 활동, 여성 연구 활동 등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이 된다(곽형대, 2006).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성의 정치참여란 여성 스스로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공 정책이나 국민 또는 국가 지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행해지는 대중의 계획적인 행동으로 말할 수 있다.

2. 여성 정치참여 필요성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핵가족화로 자녀가 감소하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적 평등, 정치적 평등, 인권신장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여성들은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래사회에서 국가발전은 여성인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여성이 사회진출과 정치참여를 위한 법·제도적 여건을 잘 갖추었을 때 비로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여성들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다.

이는 여성이 사회적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참여비율, 전문직 참여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이 정치적 관심도로 증가하고 정치 참여하려는 욕구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여성도 국가경쟁력이 원천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되어야 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현실은 여성들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대표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남성위주의 정치체계에서 여성 참여가 필요한 것은 자유와 평등의 정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정치에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정치적 대표성의 평등사상 또는

기회균등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존중 사상의 민주주의 이념에도 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정치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참여하는 대의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오늘날 민주정치가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를 하도록 하는데 본질이 있다(최종두, 1985).

현대 정치가 민주주의 방식인 대의제를 취하고 있는 한 단순히 수동적 행위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대표로서 참여한다는 점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 직업별, 연령별, 성별 불균형을 시정하는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 구현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국애영, 2006). 이러한 점에서 여성이 정치참여는 중요한 맥락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여성 정치참여 저해요인

우리나라의 여성이 정치참여 비율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여성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의식구조 요인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역할론을 들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여성의 역할이 가정내에서의 역할을 우선시하게 강조하거나 사회생활에서도 남성들의 보조적인 역할로 인식되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정치를 아직도 남성들의 주된 영역으로 인식되게 작동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해요인의 인식이 틀은 여성은 정치에 적합하지 않고 리더쉽이 부족하다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 여성후보자에게 투표하기를 망설이게 하는 경우로 작용한다. 둘째는 정당의 남성 중심적 구조에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정당은 일반적으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이는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정당의 기능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천하고 입법부의 조직화된 법칙을 제공하며, 주어진 문제에 대해 공공여론을 구체화시킴으로 정치권력에 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임현주, 2001).

이러한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이 대표성과 공익성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정당 활동이 매우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정당정치의 현실은 여성의 주요의사결정 기구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선거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이나 정당 활동에 기여하는 바는 크나 당내 여성의 지위확보나 대표성의 확보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정치인들이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일단 정치에 나서려는 여성의 수가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 정치구조가 정치 지도자 중심으로 계파 정치를 띠는 양상에서 이해관계가 적은 여성에게 공천해 주는 경향이 적으며, 특히 당선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여성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주요원인 중에 하나이다(류선진, 2006).

3. 여성의 정치참여 역사

오늘날 참정권 및 선거권은 성인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여성이 참정권과 투표권을 쟁취한 역사는 100년 전 정도이다. 세계 정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고대그리스·로마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 역사에서도 여성은 배제되어 있었다.

선거와 투표의 권리는 영국에서 1832년 차티스트 운동의 결실로 모든 성인 남성이 선거권을 획득하였고, 여성은 1918년에 30세 이상의 기혼여성에게만 허용되었다. 미국은 1920년 수정헌법 19조(남녀평등 조항)이 통과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848년 보통선거가 도입 된지 100년만인 1946년에 여성투표권이 인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1948년 5월10일 총선거 때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여성은 정치적인 주체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배제되었다.

이러한 이면에는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이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박의경, 2014). 여성이 정치 참여는 근대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서구여성들의 투표권을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와 함께한다. 이러한 과정들이 평등한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적인 정치적 근대화과 정치발전이 올바르게 이룩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20세기 들어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에 남녀평등을 명기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 여성들은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하게 된다.

멕시코에서 1975년 7월 16일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었다. 100여 개국 대표들이 참가하여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유엔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삼고 1976년부터 1985년까지 ‘유엔여성 10년’으로 정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1995년까지 30%이상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각국에 권고하였다(박선영, 2007).

또 1990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각국의 정치·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을 우선과제 다룰 수 있도록 촉구했다(백경남, 1997). 이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행동강령을 채택하여 여성의 권력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보고서, 1995).

이러한 노력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참여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9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을 제정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 실무위원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로 변경, 2018.3월)

현재 IPU(국제의원연맹)에서 발표한 세계 각국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을 살펴보면 제일높은 나라는 르완다가 국회의원 정원 80명 중 49명으로 61.3%, 쿠바가 국회의원 정원 605명 중 322명으로 53.1%,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300명중 51명(지역구26명, 비례대표 25명)으로 17%로 120위를 차지하고 있다.

1)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여왔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는 여성할당제,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도이다.

① 여성할당제

여성할당제가 우리나라 공직선거에 등장한 것은 2000년 2월 16일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된 정당법에서 이다. 여성할당제란 잠정적인 우대조치의 하나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정치적 수단으로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이다(안진희, 2010). 여성할당제는 대상, 법적 구속력의 정도, 자격요건의 여부, 쿼터 크기의 기준, 적용영역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김선욱, 1997)

즉 여성할당제는 관습이나 사회체제에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실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써 과거에 행해지던 차별 결과를 교정하거나, 차별을 받는 집단의 특수한 요구를 보충해주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는 불평을 평등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건 형성의 의지와 변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여성 상황을 고려한 평등 촉진 정책이다(현정화, 2014). 즉 여성할당제는 양성평등이 실현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으로 할당제의 성격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으로 사료될 수 있다.

가. 여성할당제 시행과정

2000년 2월 16일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된 정당법에 여성할당제가 처음 등장한 이후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2002년 3월 7일 개정하여 공직선거에 확대적용 하였다. 즉 정당의 비례대표는 정당법 제31조 제4항에 의거 전국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한다. 제5항에서는 ‘정당은 선거구 시·도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또한 비례대표 선거구 시·도의원의원선거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3월 12일 법률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을 50%이상 추천하도록 강화하였다. 정당법에서 규정하는 여성할당제를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으로 옮겨 규정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중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6년 4월 28일부터 여성추천보조금 적용 대상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 선거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전학선, 2010).

여성할당제는 현재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에서는 ‘정당의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에게 여성할당제를 강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10년 제5차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정당의 지역구 후보 여성할당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변경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여성지방의원 후보 1명이상 공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시 모든 후보의 등록이 무효화된다.

나. 여성할당제의 형태

여성할당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선거법과 정당법에 각 정당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침의 목표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여성할당제 형태

구분	형태	
자격	자격무관할당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해놓고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비율을 이행
	최소자격요건할당제	비율을 정하여 어느 한 성이 대표성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격만을 구비하면 임명하는 방법
	동일자격시 우선적 고려할당제	자격에 관해 남녀 구분 없이 평가하고 동일한 자격일 경우 지금까지 대표성이 부족했던 성에 우선권을 주는 방법
법적효과	법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확정된 할당율과 목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규제, 감독 등으로 규정
	경제적 기속력	기업, 정당 등에 대해 할당제를 실시하지 않을 시에

	이 있는 할당제	보조금, 재정적 이익, 조세상의 혜택을 주지 않는 방법
	자발적 실시를 유도하는 방침	정부의 지침, 행정지도를 통해 할당제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영향을 줌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주고하 다발적인 실시를 유도
목표할당제		일정기간 내에 특정 지위나 직위에 여성이 일정 비율이 되도록 입법자는 목표율만 정해주고 집행에 대해 적용은 개별적으로 위임
확정할당제		채용이나 피교육자 선정 등에서 대표성이 낙후된 성에 대해 할당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선 고려를 통해 결정

출처 : 광형대(2006), 여성 할당제 도입과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확대.

②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이다. 이는 의회 구성에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즉 한 정당이 투표에서 유권자로부터 n%의 득표를 받았다면, 의회 전체 의석에서 약 n%의 비율만큼 해당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제는 과다득표자나 최다득표자 뿐만 아니라 모든 투표 결과를 의석수에 반영하기 위한 선거 제도이다.

비례대표제는 19세기 후반 벨기에의 법학자인 빅토르 동트가 처음 고안하였다. 이후 스위스의 티치노 주에서 1890년에 최초로 비례대표제가 채택된 이후 몇 개의 주에서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였다. 벨기에서는 1900년 국가단위로서는 처음으로 정당명주제가 채택되었다. 이후 유럽국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 더 폭넓게 채택되고 있는 것이 비례대표제이다. 유럽 연합의 유럽 의회 의원들은 전원이 이 방식으로 선출된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에 의거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 여성후보자 추천제를 도입하여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을 포함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비례대표제 여성홀수 순위 배정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할수 있다

③ 중선거구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는 다르며, 대선구구의 일종으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것과 같이, 중선거구제도는 보통 한 선거구에서 2명 -5명을 선출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 원선거구의 확정) 제2항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2006년 제4차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로 전환되었다. 중선거구는 특정한 정당으로 의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 3 절 해외 여성의 정치참여

1. 외국 지방자치에서의 여성의 참여

세계여성의 정치 참여는 1975년 유엔의 “세계 여성의 해 선포” 이후 각 나라 지방의회의 여성 참여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각 나라별로 여성의 정치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첫째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2000년 남녀동수법 시행으로 여성이 정치 참여비율 급격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과거 프랑스 여성이 정치적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주 의회인 경우 1992년 총 1,671명의 의원 중 여성의원의 206명으로 12.3%를 차지하고 있었다. 1995년 시의회의 경우 여성의원의 107,979명으로 21.7%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남녀 동수법 시행은 여성이 정치 참여 비율은 47.5%로 세계적으로 높은 모범국가로 손꼽히고 있다(김민정, 2002).

둘째는 북유럽의 스웨덴이다. 1970년대 초반 여성이 정치참여 비율은 14%정도였다. 하지만 각 정당의 합의하에 “한 성이 최소 40%의 대표성을 가져야 한라”

라는 취지하에 할당제가 시작되었다. 이를 제일 먼저 1972년에 시민당과 자유당이 40%할당제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좌파당이 1980년에 50%할당을 하였고, 1991년에 녹색당이 50% 수준이 할당제를 시행함으로써 세계에서 여성이 정치 참여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이 여러 지역을 살펴보면 핀란드는 여성이 정치 참여 비율이 31.6%이고, 독일은 이미 1990년대 중반에 10만 이상의 시의회의 여성의 원 참여비율이 23.2%이며, 노르웨이는 1985년에 여성의원 참여비율이 35%를 넘었고, 1998년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여성의 지방의원 참여비율이 22.7%, 이다(박선영, 2007).

2. 프랑스의 여성정치 참여

프랑스는 유럽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된 편은 아니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이 일어날 무렵 프랑스 여성들의 정치활동은 시위와 토론, 평민회의에 참석하였다. 일부는 격렬한 논쟁에 참가하는 등의 정치적 활동을 하였다. 이는 17세기 살롱의 교류와 담론의 중심이 되는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던 여성들의 혁명 이후 실시된 투표와 시민권 행사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일부 인사들이 의견을 내놓았지만 논쟁만 그치고 만다.

세계에서 인권선언으로 유명한 프랑스 혁명은 만인 앞에 평등을 주장하였지만 인구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의 평등에는 눈을 감았다. 일부 여성단체들의 투표권과 정치참여를 투쟁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올랭프 드 구즈가 있다. 올랭프 드 구즈는 1791년 ‘여성과 여성 시민권 선언’을 공포하였다. 여기에는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나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여성은 처형대에 오를 권리를 가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의회 의장석에 오를 권리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1793년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한다.

그리고 1793년 이후 여성들의 단체를 결사하는 것, 정치집회에 참석하는 것, 심지어 5명 이상 모이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법안을 제정하며 여성은 철저하게 정

치에서 배제되었다. 그 후 1804년 발표된, 나폴레옹 민법에서 여성의 권리를 명시하였다. 법에서 사회생활 및 가정에서 남성이 권리만을 인정하여 여성은 수동적 지위에 머물게 된다.

1848년 혁명의 시기에도 시민으로서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었지만 참정권은 얻지 못하였다. 이후 20세기에 들어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출전한 남성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여성의 정치적인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그 때는 이미 영국(1918년), 독일(1918년), 핀란드(1906년), 덴마크(1915년), 노르웨이(1913년) 등의 인근 국가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있던 시기이다.

1944년 프랑스 하원은 6번에 걸쳐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보수적인 상원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프랑스 임시정부 대통령이던 드골장군은 1944년 4월21일 알제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하는 법령’을 프랑스국가해방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함에 따라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게 된다. 이 법령 채택으로 1945년 4월 처음으로 시의회 의원선거에 투표하게 되고 39명의 여성시의원이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프랑스 정치에서 활동하는 여성의원 비율은 50년이 지난 1990년대 말에도 증가하지 않았다.

여성들의 소극적 정치활동을 개선하고 저대표성을 해결하려는 정치인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1990년대 동수법제정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남녀평등법 실시를 위한 헌법 개정안은 1999년 6월 28일 상·하원의원들이 참석한 베르사유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 총 846표 중 찬성 745표로 채택하였다.

이는 헌법 3조와 4조의 개정 내용은 ‘의원선거와 선출직에 남녀의 평등한 진출을 유도하는 법’, ‘정당과 정치단체들은 이 원칙을 법이 정하는 조건에서 합당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1년 후 2000년 6월 6일 ‘의원선거와 선출직 선거에 남녀의 평등한 진출을 위한 법’ 즉 남녀동수법을 공포함으로써 프랑스 정치에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우호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김은희, 2005).

1) 남녀동수법 (파리테법(La Parite))

남녀동수법이 선포됨으로서 프랑스는 법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비율을 할당하는 국가가 되었다. 할당이 적용되는 것은 명부식으로 치러지는 유럽의회의원선거, 상원의원 선거, 지역의회 의원 선거, 시의회의원 선거 그리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치러지는 하원의원 선거이다. 할당적용이 예외가 되는 선거구는 소선거구로 진행되는 도의회 의원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 3,500명 이하의 주민이 사는 코뮌의 시의회 선거가 있다. 이는 <표 II-3>과 같다.

<표 II-3> 프랑스 선거 및 선거구, 의석배분, 할당방식

구분	선거제도		선거구	의석배분방식	할당	강제이행의무조항	
하원 의원	절대다수대표제		소선거구	절대다수득표자	적용	국고지원금삭감	
상원 의원	2명이하	절대다수대표제	소선거구	절대다수득표자	적용 안됨		
	3명이상	비례대표제	도단위	비례에 따라	적용	남녀후보 동수 아닌 명부는 접수 안됨	
지방 의원	지역의회		도단위	절대다수득표자	적용	남녀후보 동수 아닌 명부는 접수 안됨	
	도의회		코뮌단위	비례에 따라	적용 안됨		
	시의회	3,500명 이하	개방식 비례대표제	코뮌단위	비례에 따라	적용 안됨	
		3,500명 이상	비례대표제	코뮌단위	비례에 따라	적용	남녀후보 동수 아닌 명부는 접수 안됨
유럽 의원	비례대표제		전국단위	비례에 따라	적용	남녀후보 동수 아닌 명부는 접수 안됨	

출처 : 박선영(2007),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실태와 개선방안 재인용

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유럽의회, 상원, 시의회, 지역의회가 해당)의 경우 각 정당과 정치단체는 할당제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작성된 후보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할당을 지키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남녀 각각50%의 후보를 공천해야 하며, 남녀의 수의 차이가 1명을 초과하는 명

부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비례대표제의 명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다.

주민 3,500명 이상의 코뮌의 시의회 선거(전체의 7.2%에 해당), 지역의회의원 선거, 코르시카의회의선거는 6명을 단위로 나누어서 순에서 관계없이 3명의 남자와 여자를 각각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의원 선거나 유럽의회의원선거의 명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녀후보를 번갈아 명기해야 한다. 그러나 남녀동수법은 시장, 부시장, 의장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김은희, 2005).

3. 독일 여성정치 참여

독일의 여성할당제도 역시 자발적 선택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독일의 여성들은 1918년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60년 동안 독일의 여성정치참여는 제자리걸음을 하였다. 이후 1970년대 말부터 남성 중심의 선거제도를 개편하게 된다. 여성운동가들은 제도권 내의 여성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당 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전략’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떠오른 것이 ‘정당 내 자발적 할당제’다.

1980년대 정당을 중심으로 할당제를 채택한 것은 ‘점진적 경로’ 모델의 노르딕 국가와 유사하지만, 하지만 할당제 채택이전 시기의 노르딕 국가들의 여성이 대표성이 20~30% 수준이었던 점이 다르다. 이는 할당제 채택 이전 시기의 독일 여성의 의회 대표성이 10%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의 노르딕 국가의 ‘점진적 경로’와 구분되는 점이다(전경옥, 2008).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1980년대 중반 최초로 녹색당은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독일의 최대 정당인 사민당, 기민·기사당 연합(기민련)이 할당제를 채택하게 된다. 이후 독일이 여성정치 참여는 1998년 이후 30% 수준을 넘는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

여성할당제를 독일의 정당들이 채택하게 된 계기는 정당의 선거 경쟁 때문이다. 당 내부에 여성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제가 유권자의 표와 연계될 것이라는 사실이 독일의 주요 정당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다. 녹색당(좌익 성향의 소규모 정당)→사민당(좌익 성향의 대규모 정당)→기민당(우익 성향의 대규모 정당)으로 이어진 할당제 전이 현상은 할당제 도입으로 많은 여성 유권자에게 환영을 받은 녹색당 지지자 중 다수가 사민당의 여성 지지자였다는 데서 시작됐다

(여성신문, 2008). 이는 <표 II-4>와 같다.

<표 II-4> 독일 정당의 여성할당제

정당	여성후보 할당 기준	채택시기
좌익당	50%	통일시점
연대90/녹색당	50%	1986년
기독교민주연합	적어도 33%(후보 리스트의 매 세 번째 후보는 여성이어야 함.)	1994년
사민당	40%(남녀후보 교차지목, 매 다섯 번째 후보는 남녀 누구나 될 수 있다.)	1988년

자료 : 자료 : 전경옥(2008) 한국,스웨덴, 독일의 여성정책 비교연구 재인용

1) 사회민주당의 할당제

독일의 정당역사에서 사회민주당은 13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 정당은 사회민주주의를 기조로 사회평등 강조로 여성권익을 옹호하여 왔다. 이에 1988년 당 조직과 의원의 남녀 양성이 최소한 40% 이상 되도록 하는 할당제 규정을 결정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켜왔다. 이후 유럽의회, 연방주의회, 지방자치의회 선거에서 정당명부에 여성후보를 세단계로 1990년 25%, 1994년 33.3%, 1998년 40%로 여성들에게 할당하였다(박선영, 2007).

2) 녹색당

1981년 창당한 녹색당은 독일내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에 당내 정책기조가 여성과 남성의 의회 진출비율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 당헌과 당규에 여성할당제를 50%로 명시하였다. 선거명부를 작성시에도 여성을 홀수에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정치 참여비율을 높이고 있다.

3) 기독교 민주연합

1988년 결성된 기독교 민주연합(이하 기민련)은 “여성성 정치적 평등을 위한 기본 노선”에 따라 당직자와 여성의원의 비율을 여성당원의 비율에 비례하여 임명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후 1994년 독인연방전당대회에서 최소한 당내 직책과 여성의원의 비율을 33%로 하는 “쿠오룸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4) 민주사회당

민주사회당은 당협과 당규를 통해 선거 또는 공직후보 공천시 여성할당비율을 50%로 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다. 여성이 정치 참여비율을 높이하고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당규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1988년에는 당 대표부 18명중 남녀비율을 5:5로 하여 여성을 9명으로 하는 등 여성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기준으로 민주사회당 소속이 연방하원의원의 비율은 37명 중 22명이 여성의원으로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 4 절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여성의 정치에 참여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을 정치영역에서 여성이 대표성을 확보시키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연구들의 진행이 되었다. 먼저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연구 중 정부관리를 선출하고 이들의 결정하는 정책적 영향 행동에 관한 연구는 Verba & Nie(1978)에 실시하였다. Weiner(1971)은 광의의 의미로 정치참여는 조직화된 것이든 비 조직화된 것이든, 지속적이거나 혹은 산발적이거나,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혹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그 과정들의 성공적이거나 그렇지 못하든 간에 지역적 수준 및 전국적인 수준에서 공무행정의 선택과 공공정책 등 정치지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모든 자발적인 행동을 연구하였다.

여성이 정치참여 연구에서는 김은희(2005)는 프랑스 여성의 효율적인 정치 참여 정책 연구를 위해 남녀동수법 연구를 통해 프랑스 사회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사회·문화적요인, 정치적 제도, 정당의 참여 요인 등을 알아보았다. 전여옥(2008)은 여성후부 할당정책을 독일, 스웨덴, 한국 등을 비교하여 여성할당정책이 국가별로 정치적 대표성이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박선영(2007)은 여성이 정치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선, 정치문화의 개선, 여성단체 및 여성정치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여성이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허강숙(2009)은 지방자치 중 생활정치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지역정치에 관심을 갖는 배경과 지방정치에 진출하는 과정등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여성의원들이 지역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이은희(1999)는 지방자치제도에서 분권화된 정부가 집권화된 정부보다 국민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지역사회로부터 여성의 정치력 결집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지차에서 여성의 참여기반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여성할당제와 정당공천제 연구에서는 전학선(2010)은 정치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직 선거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을 반드시 추천하는 제도의 여성할당제도의 법적 고찰을 통해 여성이 청지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곽형대(2006)은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 확대 현상이 여성할당제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할당제의 형태와 법적 성격, 도입된 배경 등을 연구하여 여성이 정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정치에서 여성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는 손경호(2015)는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제6회 동시지방선거까지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 정당공천제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고 여성이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박지영·조정래(2013)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성위원의 정책도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하는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김종희(2010)는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선거의 현황을 분석하여 여성의무공천제 내실화라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여성이 지방정치 참여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선거제도 이외에 여성 후보 발굴을 위해 여성 후보 대상 조력자 프로그램 운영, 여성정치인 인재 풀 운영, 외부 여성집단 연계 프로그램, 정당 차원의 여성 후보 육성 등 여성 정치인 양성을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현정화(2014)는 여성의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지역구 여성후보 의무공천제, 여성 정치인 육성펀드, 비례대표제 확대, 여성정치인 양성교육, 전직 정치인과 정치 희망생들과 멘토-멘티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Ⅲ. 여성의원 의정활동 실태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 여성의원 참여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입후보 당선자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입후보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8대, 2006년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성입후보자가 104명, 여성입후보자가 4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선자 현황은 남성 29명이다. 비례대표 입후보자는 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총 20명이다. 이 중 당선자 현황은 남성 2명, 여성 5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9대, 2010년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70명, 여성 5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선자 현황은 남성 29명으로 전 의석을 차지하였다. 비례대표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7명, 여성은 12명이 입후보하여 총 19명이다. 이 중 비례대표 당선은 남성 2명, 여성 5명이 당선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10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한 현황을 살펴보면 총 80명 입후보자 중 남성 입후보자는 남성이 72명, 여성이 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선자 현황은 남성 27명, 여성 2명으로 여성의원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당선되었다. 비례대표 입후보 현황은 총 17명 중 남성 5명, 여성 12명이고 당선자 현황은 남성 2명, 여성 5명이다. 지방정치에서 여성이 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2006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에 여성후보를 50%이상 의무 추천하도록 명시하였고 그 중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홀수 마다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통해 비례대표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III-1> 도의회 의원 입후보·당선자 비교

구분		연도	입후보현황		당선자현황		비례대표입후보 현황		비례대표당선자 현황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도 의 회 의 원 선 거	8대	2006	104	4	29	-	10	10	2	5
	9대	2010	70	5	29	-	7	12	2	5
	10대	2014	72	8	27	2	5	12	2	5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자료

2. 제주특별자치도 역대 여성의원 일반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제8대, 2006년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당별로는 민주당 2명(O 의원 탈당으로 O 의원이 6개월 동안 비례대표를 승계함), 한나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총 5명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 1명, 40대 1명(O 의원 60대 승계), 50대 2명, 60대 1명이다. 비례대표 당선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졸 2명, 전문대졸 1명, 고등학교 졸업 2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요경력으로는 정당인이 3명(O 의원 승계 / 정희직물대표), 기업대표 1명, 여성농민회 제주지부활동가 1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9대, 2010년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당별로는 총 5명중 새누리당 2명, 새정치 민주연합, 통합진보당, 국민참여당, 각각 1명씩 이다. 연령대는 30대 2명, 40대 2명, 50대 1명이고 당선자의 학력 대학졸업 4명, 고등학교 졸업 1명이다. 주요경력으로는 새천년민주연합, 새누리당, 국민참여당인 경우 각각 제주도당 여성위원장이고, 통합진보당당선자는 제주도당 부위원장, 새누리당 당선자는 제주도당 윤리위원장이었다. 직업별로는 라디오 제작부장, 정당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민주당인 경우 새정치 민주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현직 비례대표 도의원이 재선 비례대표로 활동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제10대 , 2014년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현황을 살펴보면 선거를 통한 선출직 당선 2명, 비례대표 5명으로 총 7명의

여성의원이 활동하였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4명, 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이다.

이 중 9대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L 의원은 제주시 6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역시 제9대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H 의원 역시 서귀포시 24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선거구 및 비례대표 당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 6명, 60대 1명으로 젊은 여성이 정치 참여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선자의 학력은 대학원 석사 2명, 학사 2명, 전문학사 2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당별 활동은 5명의 당선자는 정당 활동 경험이 있고, 2명이 당선자는 정당 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다음 <표 III-2>과 같다.

<표 III-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당선자 현황

구분	내용					
	성명	연령	정당	지역구	학력	주요경력
8대	O	62세	민주당	비례대표	없음	정회직물대표 / 중소기업 이업종 제주도연합회장. 김만덕 봉사상 수상
	K	54세	한나라당	비례대표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과 졸업	제주도당 여성부장 한라당전국여성부장 협의회 회장
	K	61세	한나라당	비례대표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제학중	한나라당 서귀포시 남제주군지구당 여성부장
	B	50세	민주당	비례대표	에월상업고등학교 졸업	형보수산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민주당제주도당 여성부위원장
	K	39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졸업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제주도 연합사무처장/민주노동당제 주도당 여성부위원장
	O	43세	민주당	비례대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9대	L	49세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주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제주MBC라디오 제작부장 한나라당제주도당 여성위원장
	H	48세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주대학교 원예학과 졸업	사간법인 용변인협회 제주도 본부 회장 한나라당제주도당 윤리위원장
	B	54세	새정치민주 연합	비례대표	에월상업고등학교 졸업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민주당제주도당 여성위원장
	K	36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제주대학교 사학과 졸업	민주노동 제주본부 부분부장 민주노동당제주도당 부위원장
	P	35세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탐라대학교 경영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과정	제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팀장 국민참여당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10대	L	53세	자유한국당	제6선거구	제주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제주MBC라디오 제작부장 제주특별자치도의원

H	52세	바른미래당	제24선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로타리3660지구제주5구 역총재지역대표
K	61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제주교육대학(2년제) 졸업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유니세프 서귀포시후원회 부회장
H	56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새누리당제주도당 여성위원장 경의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K	57세	더불어민주 당	비례대표	산업정보대학교 관광호텔경영과 졸업	민주당제주도당 제주도 울지역여성위원장 민주평통자문위원
K	57세	더불어민주 당	비례대표	제주관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민주당 제주도당 서귀포시지역여성위원장 제주도장애인지원협의회 부회장
Y	51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졸업	제주도지체장애인 협회 운영위원 한국장애인경제협회 제주협의 부회장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제 2 절 여성의원 의정 활동 분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의 당선현황은 전체 41명의 도의원 중 8대와 9대 각각 5명씩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10대인 경우 7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례대표 5석과 지역구 2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비례대표 여성후보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원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보면 조례공동발의인 경우 남성의원들도 같이 공동발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녀를 분리하여 백분율을 나타내는 것이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조례 제·개정을 합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실히 분석할 수 있는 여성의원 대표발의를 중심으로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8대회기 중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 수는 총 150건이다. 이 중 여성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공동발의 74건, 대표발의 16건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치·행정 분야 2건, 12.5%이고, 여성·복지 분야 9건으로 56.3%로 과반수이상의 조례안 발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분야도 5건으로 31.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9대회기 중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총 238건 이다.

이중 여성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공동발의 41건, 대표발의 29 건 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치·행정 분야 4건으로 14%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여성·복지는 18건으로 69%을 보이고 있다. 농·수·축산경제 및 교육분야 각각 1건으로 4%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문화관광분야는 5건으로 1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0대회기 중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총 162건 이다. 이중 여성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공동발의 147건, 대표발의 66건 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치·행정 분야 4건으로 6%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여성·복지는 39건으로 59%을 보이고 있다. 도시건설·환경분야 3건으로 5%이 비율을 보이고 있고, 농·수·축산경제 1건으로 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분야는 7건으로 11%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문화관광분야는 12건으로 1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이 지방의회 참여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례안 제·개정 전수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성치 참여는 여성·복지 분야에 활발한 조례안 제·개정으로 전체적인 사회적 생활분야에 다른 의원들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이는 다음 <표 III-3>와 같다.

<표 III-3>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여성 도의원 분야별 발의 조례안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여성 도의원 분야별 발의 조례안														
구분	의원수	발의조례안(분야별)												
		자치, 행정		여성, 복지		도시건설, 환경		농수축산경제		교육		문화관광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8대	5	2	12.5	9	56.3	0	0	0	0	0	0	5	31.3	16
9대	5	4	14	18	69	0	0	1	4	1	4	5	17	29
10대	7	4	6	39	59	3	5	1	2	7	11	12	18	66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다음 <표 III-3>과 같이 여성의원들의 발의한 분야별 조례와 소속 상임위배정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 여성·복지 분야에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문화·관광 분야, 자치·행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도시건설·환경 분야와 농

수축 · 경제 분야에는 발의한 건수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원의 삶의 경험과 젠더적 감수성이 작용하는 부분이다. 아직까지도 여성의 주된 활동 영역이 돌봄과 연관된 사회적 활동범주 머물러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총괄적인 조직 · 예산분야를 다루는 자치 행정 분야에 해당하는 조례인 경우도 대다수가 의회운영과 연관된 조례가 다수를 차지 하지만 여성의원들이 참여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건설 · 환경 분야, 1차 산업과 경제 분야의 상임위 활동이나 조례 제 · 개정 분야에 있어서도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중앙정부의 위임된 사무처리가 많고 특히 개발 · 환경 분야에 있어서 권한이양이 많이 되어 있다. 이는 도의원들의 고도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은 사안임을 감안할 때 여성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가결현황.

1)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8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25건으로 남성의원 22건, 여성의원 1건, 의회운영위원장 1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9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28건으로 남성의원 14건, 여성의원 1건, 의회운영위원장 13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0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39건으로 남성의원 6건, 여성의원 1건, 의회운영위원장 31건, 도지사 1건이다. 이는 다음<표 Ⅲ-4>와 같다.

<표 Ⅲ-4>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가결현황

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도지사	합계
8대	22	1	2		25
9대	14	1	13		28
10대	6	1	31	1	39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2)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8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145건으로 남성의원 9건, 여성의원 1건, 행정자치위원장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34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9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151건으로 남성의원 32건, 여성의원 1건 행정자치위원장 4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4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0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184건으로 남성의원 59건, 여성의원 8건, 행정자치위원장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6건이다. 제10대 도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서 여성의원 지역구에서 당선됨에 따라 여성이 정치참여 비율이 높아졌다. 이에 상임에 진출하여 조례안 발의 가결 건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표 III-5>와 같다.

<표 III-5>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가결현황

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행정자치위원장	도지사	합계
8대	9	1	1	134	145
9대	32	1	4	114	151
10대	59	8	1	116	184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3) 복지안전위원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8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98건으로 남성의원 10건, 여성의원 7건, 복지안전위원장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80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9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92건으로 남성의원 32건, 여성의원 14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6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0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166건으로 남성의원 29건, 여성의원 36건, 복지안전위원장 5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6건이다. 각 회기별로 여성이 복지안전 조례 가결 현황은 남성의원에 비해 3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많은 조례 가결 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음 <표 III-6>와 같다.

<표 III-6>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가결현황

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복지안전위원장	도지사	합계
8대	10	7	1	80	98
9대	32	14	0	46	92
10대	29	36	5	96	166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4) 환경도시위원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8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112건으로 남성의원 17건, 환경도시위원장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4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9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85건으로 남성의원 22건, 환경도시위원장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0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136건으로 남성의원 36건, 여성의원 5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5건이다. 10대 의회에 여성의원의 정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도시 분야 상임위에 배정되었다. 여성의원의 발의한 조례안 가결 건수는 남성의원들의 수준으로 여성이 정치참여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표 III-7>와 같다.

<표 III-7>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환경도시위원회 조례안 가결현황

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환경도시위원장	도지사	합계
8대	17	0	1	94	112
9대	22	0	1	62	85
10대	36	5	0	95	136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5) 문화관광위원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8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80건으로 남성의원 17건, 여성의원 2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1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9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68건으로 남성의원 30건, 여성의원 5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3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0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114건으로 남성의원 36건, 여성의원 12건, 문화관광위원장 2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4건이다. 여성의원들의 정치 참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분야에 맞는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여성의원들의 조례안 가결건수가 각 회기를 거듭하면서 높아짐을 할 수 있다. 이는 다음 <표 Ⅲ-8>과 같다.

<표 Ⅲ-8>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문화관광위원회 조례안 가결현황

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문화관광위원장	도지사	합계
8대	17	2	0	61	80
9대	30	5	0	33	68
10대	36	12	2	64	114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8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89건으로 남성의원 14건,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4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9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63건으로 남성의원 27건, 여성의원 6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0건이다. 이는 여성의원의 상임위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조례안 가결건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0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128건으로 남성의원 38건, 여성의원 1건, 농수축 지식사업위원장 2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87건이다. 이는 다음 <표 Ⅲ-9>와 같다.

<표 Ⅲ-9> 2006년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조례안 가결현황

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농수축산지식 산업위원장	도지사	합계
8대	14	0	1	74	89
9대	27	6	0	30	63
10대	38	1	2	87	128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참고하여 재작성(10대에 경제 분야 추가)

7) 교육위원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8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70건으로 남성의원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68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9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69건으로 남성의원 25건, 여성의원 2건, 교육위원장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41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0대회기 중 조례안 가결 건수는 99건으로 남성의원 47건, 여성의원 8건, 교육위원장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43건이다. 10대에서는 여성의원의 교육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조례안 가결건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교육위원회 조례안 가결현황

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교육 위원장	교육감	도지사	합계
8대	1	0	0	68	1	70
9대	25	2	1	41		69
10대	47	8	1	43		99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2. 여성도의원 상임위원회 배정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8대회기 에서는 총 5명의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활동하였다. 세부적으로 여성의원들의 상임위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는 총 5명의 여성의원이 여성·복지 분야 3명, 문화·관광분야, 교육 분야 각각 1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9대회기 에서도 총 5명의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이 활동하였다. 세부적으로 여성의원들의 상임위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전반기 의정활동에서는 총 5명의 여성의원이 여성·복지 분야 2명, 농수축·경제 분야, 자치·행정분야, 교육 분야 각각 1명이다.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총 5명의 여성의원이 교육 분야 2명이고, 자치·행정분야, 여성·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가 각각 1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0대회기 에서는 총 7명의 여성의원들이 활동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5명이다. 여성의원들의 상임위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전반기 의정활동에서는 총 7명의 여성의원인 여성·복지 분야 4명, 자치·행정분야, 문화·관광분야, 교육분야 각각 1명이다.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총 7명의 여성의원인 여성·복지분야 4명, 자치·행정, 농수축·경제분야, 문화·관광 분야가 각각 1명이다. 이는 다음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2006년 특별 자치도 출범이후 여성도의원 상임위원회 배정현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여성도의원 상임위 배정현황					
구분	8대	9대		10대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자치·행정	1	1	1	1	1
여성·복지	3	2	1	4	4
도시건설·환경					
농수축·경제		1			1
문화·관광	1	0	1	1	1
교육	1	1	2	1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3. 제주특별자치도 상임위원회별 세부구성현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상임위원회 구성현황은 총 7개의 상임위원회가 활동하였다. 첫째는 의회운영위원회, 둘째는 행정자치위원회. 셋째는 복지안전위원회, 넷째는 환경도시위원회, 다섯째는 문화관광위원회, 여섯째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일곱째는 교육위원회가 활동하였다.

1)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제8대 후반기는 총 6명으로 남성의원 5명, 여성의원 1명이다. 제9대 전반기는 총

9명 모두 남성의원이다. 후반기도 총11명 모두 남성의원이다. 제10대 전반기는 11명 중 남성의원 9명, 여성의원 2명이다. 후반기는 총11명중 남성의원 10명, 여성의원 1명이다. 이는 다음 <표 Ⅲ-12>와 같다.

<표 Ⅲ-12>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의회운영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회기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8대	후반기	5	1	6
9대	전반기	9	0	9
	후반기	11	0	11
10대	전반기	9	2	11
	후반기	10	1	11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2)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은 제8대 후반기는 총 6명으로 모두 남성의원이다. 제9대 전반기와 후반기는 각각 총7명으로 남성의원 6명, 여성의원 1명이다. 제10대 전반기와 후반기는 각각 총 6명으로 남성의원 5명 여성의원 1명이다. 이는 다음 <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행정자치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회기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8대	후반기	6	0	6
9대	전반기	6	1	7
	후반기	6	1	7
10대	전반기	5	1	6
	후반기	5	1	6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3) 복지안전위원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성은

제8대 후반기는 총 6명으로 남성의원 3명, 여성의원 3명이다. 제9대 전반기는 총 6명으로 남성의원 4명, 여성의원 2명이다. 후반기도 총6명으로 남성의원 5명, 여성의원 1명이다. 제10대 전반기와 후반기는 각각 총 6명으로 남성의원 2명 여성의원 4명이다. 이는 다음 <표 Ⅲ-14>와 같다.

<표 Ⅲ-14>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복지안전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회기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8대	후반기	3	3	6
9대	전반기	4	2	6
	후반기	5	1	6
10대	전반기	2	4	6
	후반기	2	4	6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4) 환경도시위원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구성은 제8대 후반기는 총 6명으로 모두 남성의원이다. 제9대 전반기와 후반기는 각각 총6명으로 남성의원 6명이다. 제10대 전반기와 후반기는 각각 총 6명으로 모두 남성의원이다. 이는 다음 <표 Ⅲ-15>와 같다.

<표 Ⅲ-15>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환경도시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회기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8대	전·후반기	6	0	6
9대	전반기	6	0	6
	후반기	6	0	6
10대	전반기	6	0	6
	후반기	6	0	6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5) 문화관광위원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구성은 제8대 후반기는 총 6명으로 남성의원 5명, 여성의원 1명이다. 제9대 전반기와 후반기는 각각 총6명이다. 전반기는 모두 남성의원이다. 후반기는 남성의원 5명, 여성의원 1명이다. 제10대 전반기와 후반기는 각각 총 6명으로 남성의원 5명 여성의원 1명이다. 이는 다음 <표 Ⅲ-16>과 같다.

<표 Ⅲ-16>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문화관광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회기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8대	후반기	5	1	6
9대	전반기	6	0	6
	후반기	5	1	6
10대	전반기	5	1	6
	후반기	5	1	6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산 지식산업위원회 구성은 제8대 후반기는 총 7명으로 모두 남성의원이다. 제9대 전반기와 후반기는 각각 총6명이다. 전반기는 남성의원 5명, 여성의원 1명이다. 후반기는 남성의원 6명이다. 제10대 전반기는 남성의원이 총7명이다. 후반기는 총 7명으로 남성의원 6명 여성의원 1명이다. 이는 다음 <표 Ⅲ-17>와 같다.

<표 Ⅲ-17>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농수축산 지식산업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회기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8대	후반기	7	0	7
9대	전반기	5	1	6
	후반기	6	0	6
10대	전반기	7	0	7
	후반기	6	1	7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7) 교육위원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성은 제8대 후반기는 총 9명으로 남성의원8명, 여성의원 1명이다. 제9대 전반기와 후반기는 각각 총9명이다. 전반기는 남성의원 8명, 여성의원 1명이다. 후반기는 남성의원 7명, 여성의원 2명이다. 제10대 전반기와 후반기는 각각 총 9명이다. 전반기는 남성의원 8명 여성의원 1명이다. 후반기는 남성의원 9명이다. 이는 다음 <표 III-18>와 같다.

<표 III-18>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교육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회기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8대	후반기	8	1	9
9대	전반기	8	1	9
	후반기	7	2	9
10대	전반기	8	1	9
	후반기	9	0	9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제 3 절 여성의원 의정 활동 평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8대회기 중 조례안 발의 건수는 150건으로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는 3.7건이다. 이중 여성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는 3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9대회기 중 조례안 발의 건수는 238건으로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는 5.6건이다. 이중 여성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는 전회기 대비 163%가 증가한 5.8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0대회기 중 조례안 발의 건수는 162건으로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는 4건이다. 이중 여성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는 전회기 대비 80%가 증가한 9.4건이다. 이는 다음 <표 III-19>와 같다.

<표 III-19>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조례안 발의현황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조례안 발의현황			
구분	8대	9대	10대
조례안발의건수	150	238	162
1인당조례안발의건수	3.7	5.6	4.0
증감률		(+)163%	(+)80%
여성의원 1인당 발의건수	2.2	5.8	9.4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그리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남성의원 및 여성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8대회기 중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는 150건으로 남성의원 134건으로 89%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는 3.7건이다. 여성의원은 16건으로 11%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는 3.0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9대회기 중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는 238건으로 남성의원 209건으로 88%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는 5.8건이다. 여성의원은 29건으로 12%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는 5.8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0대회기 중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는 164건으로 남성의원 96건으로 59%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는 4.4건이다. 여성의원은 68건으로 41%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는 9.4건이다. 조례안 발의 건수를 여성의원과 남성의원의 1인당 대표발의 건수를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8대회기인 경우 여성 3건, 남성 3.7건으로 0.7건 남성의원이 앞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9대회기인 경우 여성 5.8건 남성 5.8건으로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0대회기인 경우는 여성 9.7 대 남성 4.4로서 여성의원의 1인당 발의건수가 남성의원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표 III-20>와 같다.

<표 III-20>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남,여성의원 대표발의 현황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남,여성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현황								
구분	기간	조례안발의건수	여성대표 의원발의			남성대표 의원발의		
			건수	비율	인당	건수	비율	인당
8대	2006~2010	150	16	11	3	134	89	3.7
9대	2010~2014	238	29	12	5.8	209	88	5.8
10대	2014~2018	164	68	41	9.7	96	59	4.4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위원 조례안 발의 가결현황

여성의원들의 발의한 조례안 복지 및 교육분야가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 의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조례안 발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발의인 경우 8대 여성의원 5명이 11건, 9대 여성의원 5명이 29건, 10대 여성의원 7명이 68건으로 여성의원이 정치참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례안 발의 가결건수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8대 여성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8대여성의원 활동현황은 민주당 3명, 한나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총 6명의 여성의원이 활동하였다. 여성의원의 조례안 대표 발의 현황은 총 11건으로 한나라당 6건, 민주당 5건 순이다.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은 총 123건으로 민주당 58건, 한나라당 50건, 민주노동당 15건이다. 이는 다음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제주특별자치도 8대 여성의원 조례안 가결현황

구분	계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오정희	방문추	오옥만	김순효	김미자	김혜자
대표발의	11	1	3	1	3	3	0
공동발의	123	0	25	33	22	28	15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여성의원들의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오정희 의원은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방문추 의원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및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발의 하였다. 오옥만 의원은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였다. 김순호 의원은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 조손가정 지원조례, 관광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김미자 의원은 여성발전기본 조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등을 발의하였다. 여성의 지방의회 정치 참여를 함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조례안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표 III-22>과 같다.

<표 III-22> 제주특별자치도 8대 여성의원 대표발의 세부현황

의안번호	발의일자	안건명	대표발의자	처리결과	비고
1324	10.6.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정희	수정가결	
328	07.2.27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방문추	수정가결	
983	09.5.1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1289	10.3.18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75	09.9.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오옥만	수정가결	
385	07.5.16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안	김순호	수정가결	
782	08.10.15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1212	09.12.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안		수정가결	
247	06.11.3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김미자	수정가결	
475	07.10.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82	09.05.01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2) 제주특별자치도 9대 여성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9대여성의원 활동현황은 새누리당 2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총 5명의 여성이원이 활동하였다.

민주당 여성위원의 조례안 대표 발의 현황은 총 29건으로 새누리당 15건, 새정치 민주연합 및 무소속 5건, 통합진보당 4건순이다.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은 총 43건으로 새누리당 14건, 새정치민주연합 및 통합진보당이 각각 10건, 무소속 9건 순이다. 이는 다음 <표 Ⅲ-23>과 같다.

<표 Ⅲ-23> 제주특별자치도 9대 여성의원 조례안 가결현황

구분	계	새정치 민주연합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방문추	이선화	현정화	김영심	박주희
대표발의	29	5	8	7	4	5
공동발의	123	10	8	6	10	9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여성의원들의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방문추 의원은 2선 의원으로 여성기업 지원조례, 주민사치선데 설치 운영 조례,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외국인주민 인권보장 조례안 등 기업활성화 조례안 및 여성 및 노인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주로 발의하였다.

이선화 의원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해녀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및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사회적 취약계층 인문학 서비스 지원조례,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등 여성과 문화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 하였다. 현정화 의원은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조례,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영유아복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조례,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등 복지분야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김영심 의원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조례,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한부모 지원조례, 안전한 사회만들기 결의안 등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등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 하였다. 박주희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관광약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조성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조례, 감채기금 운영조례,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금지원조례등 제주지역의 관광과 여성의 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9대 의회에서는 여성의 지방의회 정치 참여를 함에 따라 여성복지관련분야, 학교 및 교육분야, 문화콘텐츠 분야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례안이 활발하게 만들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표 III-24>와 같다.

<표 III-24> 제주특별자치도 9대 여성의원 대표발의 세부현황

의안번호	발의일자	안 건 명	대표 발의자	처리 결과	비고
1277	2013-06-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문추	수정가결	
377	2011-09-2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52	2011-09-02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49	2011-09-01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270	2011-05-24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수정가결	
1621	2014-05-30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화	수정가결	
1569	2014-03-1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494	2014-02-0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수정가결	
1493	2014-02-0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1391	2013-11-04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조례안		수정가결	
1367	2013-10-1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 서비스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688	2012-06-0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발의일자	안 건 명	대표 발의자	처리 결과	비고
383	2011-09-3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1572	2014-03-17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안	현정화	수정가결	
1454	2013-12-06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368	2013-10-10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노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안		수정가결	
1251	2013-06-03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66	2013-02-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80	2012-10-08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수정가결	
226	2011-04-07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1473	2013-12-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영심	원안가결
833	2012-12-0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69	2011-05-2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68	2011-05-23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1242	2013-05-3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박주희	수정가결	
1169	2013-03-0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수정가결	
589	2012-02-2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수정가결	
481	2011-11-07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27	2011-04-07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3) 제주특별자치도 10대 여성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0대여성의원 활동현황은 자유한국당 3명, 더불어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총 7명의 여성의원들이 활동하였다. 여성의원들의 조례안 대표

발의 현황은 총 68건으로 자유한국당 22건, 무소속 26건, 더불어민주당 21건 순이다. 결의안을 포함한 것이다.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은 총 247건으로 더불어민주당 96건, 자유한국당 83건, 무소속 68건 순이다. 이는 다음 <표 Ⅲ-25>과 같다.

<표 Ⅲ-25> 제주특별자치도 8대 여성의원 조례안 가결현황

구분	계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이선화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강익자	현정화	유진의
대표발의	68	6	4	12	9	11	6	20
공동발의	247	30	35	18	51	45	31	37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여성의원들의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고태순 의원은 특수교육진흥 조례 및 재난구호 및 기금조례, 정신질환자 지원조례,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조례 등 사회복지 및 재난 조례안 발의를 하였다. 강익자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장애인 폭력 방지 조례, 학교박 청소년 복지 조례,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 등 사회복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선화 의원은 청년 문화 예술 육성 조례, 남북교류협력조례, 문화관광해설사 조례 등 문화와 관련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영보 의원은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 조례, 양성평등 기본조례, 통일교육활성화 조례, 제주어 교육 활성화 조례 등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등을 조례안 발의를 통해 제주지역이 특화 교육과정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홍경희의원은 4차산업혁명 촉진 조례,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조례, 학생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주어 교육 및 제주이해 교육 활성화 조례등 양성평등과 교육에 관련된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현정화 의원은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조례,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를 통해 사회공동체 회복과 병역의무를 활성화 조례를 통해 건전한 제주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유진의 의원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조례,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조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등을 통해 제주지

역 전반에 소방안전 인식개선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10대 의회에서는 여성의 지방의회 정치 참여를 함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장애인 관련 분야, 문화관련 분야, 남북교류 분야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례안이 활발하게 만들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표 Ⅲ-26>과 같다.

<표 Ⅲ-26> 제주특별자치도 10대 여성의원 대표발의 세부현황

의안 번호	발의일자	안 건 명	대표 발의자	처리 결과	비 고
1942	2017-09-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	수정가결	
1900	2017-09-29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818	2017-08-25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775	2017-07-07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1771	2017-07-07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708	2017-06-01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972	2016-05-30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810	2016-02-04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92	2015-06-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198	2018-03-0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익자	수정가결
2084	2017-12-0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1990	2017-11-0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978	2017-11-02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1637	2017-05-0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33	2017-02-2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365	2016-11-04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745	2015-12-0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의안 번호	발의일자	안 건 명	대표 발의자	처리 결과	비고
674	2015-11-0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520	2015-08-28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46	2015-06-0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125	2018-01-26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선화	원안가결	
1787	2017-07-07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721	2017-06-01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1401	2016-11-04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16	2016-02-0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350	2015-06-0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1772	2017-07-07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김영보	수정가결
603	2015-10-0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98	2015-10-08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466	2015-08-28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217	2018-03-06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143	2018-03-02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경희	수정가결	
2133	2018-01-29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667	2017-06-0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87	2016-05-30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901	2016-04-0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898	2016-04-0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수정가결	
888	2016-04-08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709	2015-11-0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579	2015-08-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 번호	발의일자	안 건 명	대표 발의자	처리 결과	비 고
444	2015-06-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90	2014-09-01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1848	2017-09-29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현정화	수정가결	
919	2016-05-1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673	2015-11-0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47	2015-06-05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307	2015-06-0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03	2014-10-10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891	2017-09-29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890	2017-09-29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 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수정가결	
1889	2017-09-29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819	2017-08-2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1784	2017-07-07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진의	수정가결	
1778	2017-07-07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1774	2017-07-07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1639	2017-05-0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42	2017-02-2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64	2016-11-04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362	2016-11-0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71	2016-08-1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1050	2016-08-1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08	2016-07-0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의안 번호	발의일자	안 건 명	대표 발의자	처리 결과	비 고
971	2016-05-3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920	2016-05-1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813	2016-02-04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747	2015-12-0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304	2015-06-04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70	2015-04-0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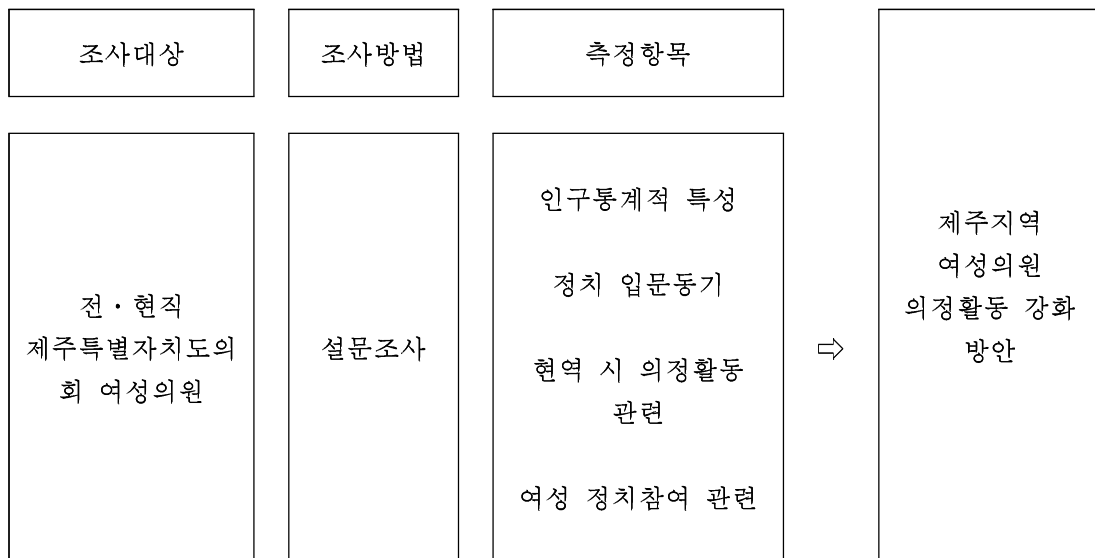
IV. 모형설정 및 조사 분석

제 1 절 조사 설계

1. 연구 분석틀 설정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 의정활동 비교를 통해 여성의원 의정활동 역량 수준을 살펴보고 여성의원 의정활동의 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현직 여성위원을 대상으로 정치 입문동기, 의정활동, 여성 정치참여에 관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 하는 것이 목적으로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IV-1] 연구의 분석 틀

2. 변수 설정 및 설문 구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조사를 위해 인구 통계적 특성, 정치 입문동기, 현역 시 의정활동 관련, 여성 정치참여 관련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인구 통계적 특성 부문은 6문항, 정치 입문동기 부문 5문항, 의정활동 부문 6문항, 여성 정치참여 부문 7문항을 선정하였다.

<표 IV-1> 변수 구성

변수명		세부 내용
인구 통계적 특성	연령	10세 단위로 세분
	선수	초선·재선으로 구분
	의원직 출신 유형	지역구 출신·비례대표 출신 구분
	소속 정당	정당 구분
	학력	고졸·대졸·대학원 이상으로 구분
정치 입문동기		의회 진출 전 정치활동 유무
		정치활동 분야
		지방정치 입문 동기
		정치활동 결심 후 준비사항
		지방정치 권유자
의정활동 관련		최초 배정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 공정성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 불공정 이유
		의당 상임위원회 및 이유
		의정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노력 여부
		의정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성과 여부
		의정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강점 여부
		의정활동 시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중요 사항
여성 정치참여 관련		여성의원 증가 정치발전 기여 유무
		여성의원 증가 긍정 이유
		여성 정치참여 저해 요인
		여성 정치 확대 요구 사항
		여성할당제 강화 여부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화 여부
		남녀 동수 여부

제 2 절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제주특별자치도 전·현직 의원의 의정활동 강화 방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 전체 20명 대상으로 2019년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18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분석 방법

수집된 설문지는 부호화작업(coding)과 오류검토 작업을 거쳤으며,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사항과 의정활동 사항과 여성의 정치참여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윈도우용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제 3 절 결과 분석

1.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특성 부문은 40대 16.7%(3명), 50대 44.4%(8명), 60대 33.3%(6명), 70대 이상 5.6%(1명)로 응답되었다. 의원 선수 특성 부문은 초선의원 77.8%(14명), 재선의원 22.2%(4명)로 응답되었다. 의원 출신 유형은 지역구 출신 27.8%(5명), 비례대표 출신 72.2%(13명)로 응답되었다. 소속 정당 특성 부문은 더불어민주당 44.4%(8명), 자유한국당 33.3%(6명), 바른미래당 5.6%(1명), 정의당 5.6%(1명), 민주노동당 5.6%(1명), 무소속 5.6%(1명)로 응답되었다. 학력 특성 부문은 고등학교 졸업 5.6%(1명), 대학교 졸업 38.9%(7명), 대학원 이상 55.6%(10명)로 응답되었다. 전·현직 특성 부문은 전직 의원 72.2%(13명), 현직 의원 27.8%(5명)로 응답되었다.

<표 IV-2> 응답자 인구 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40대	3	16.7
	50대	8	44.4
	60대	6	33.3
	70대 이상	1	5.6
	계	18	100.0
선수	초선	14	77.8
	재선	4	22.2
	계	18	100.0
의원 출신 유형	지역구 출신	5	27.8
	비례대표	13	72.2
	계	18	100.0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8	44.4
	자유한국당	6	33.3
	바른미래당	1	5.6
	정의당	1	5.6
	민주노동당	1	5.6
	무소속	1	5.6
	계	18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1	5.6
	대학교 졸업	7	38.9
	대학원 이상	10	55.6
	계	18	100.0
전·현직	전직	13	72.2
	현직	5	27.8
	계	18	100.0

2. 정치 입문 동기

1) 의회 진출 전 정치활동 경험 유무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의회 진출 전 정치활동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33.3%(6명)가 의회 진출 전 정치활동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67.3%(12명)는 의회 진출 전 정치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의회 진출 전 정치활동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정치활동 경험이 없다	6	33.3
정치활동 경험이 있다	12	67.3
계	18	100.0

1-1) 정치활동 유형

정치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2명을 대상으로 정치활동 유형으로는 주로 정당활동을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정책비서관, 중앙당 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정당 장애인위원회 운영, 정당 여성위원장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의회 진출 전 정치활동 유형

-
- 정당활동
 - 국회의원 정책비서관
 - 중앙당 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 정당 장애인위원회 운영
 - 정당 여성위원장
 - 선거캠프 지원
 - 선거운동원
-

2) 지방정치 입문 동기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지방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83.3%(15명)가 지방정치 입문 동기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입문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기타 16.7%(3명)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소외된 분야에 대한 개선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치에 입문하였다고 타났다.

<표 IV-5> 정치 입문 동기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15	83.3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하여	-	-
향후 중앙 정계로 진출하기 위하여	-	-
남녀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	-
기타	3	16.7
계	18	100.0

기타의견

소외된 분야에 대한 개선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3) 지방정치 활동 결심 후 가장 먼저 준비한 사항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지방정치(지역구, 비례대표) 활동을 결심하고 난 후 가장 먼저 준비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77.8%(14명)가 지방정치 결심에 대해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였다고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6.7%(3명)가 지역구 파악과 정책개발을 가장 먼저 하였다고 나타났다.

<표 IV-6> 지방정치 결심 후 가장 먼저 준비 한 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일	14	77.8
기탁금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일	-	-
자원봉사 등 선거운동원을 확보하는 일	-	-
지역구 파악 및 정책 개발	3	16.7
기타	1	5.6
계	18	100.0

4) 지방정치 활동 권유자 여부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지방정치(지역구, 비례대표) 활동을 누구로부터 많은 권유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38.9%(7명)가 지방정치 활동 권유를 정

당으로부터 받았다고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스로 결심 27.8%(5명), 시민사회단체 22.2%(4명), 가족 5.6%(1명), 여성단체 5.6%(1명)로 나타났다.

<표 IV-7> 지방정치 활동 권유자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스스로 결심	5	27.8
가족	1	5.6
친구	-	-
정당	7	38.9
이웃 주민	-	-
시민사회단체	4	22.2
여성단체	1	5.6
기타	-	-
계	18	100.0

3. 의정활동 관련

1) 최초 배정된 상임위원회 여부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최초 배정된 상임위원회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44.4%(8명)가 최초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배정되었다고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6.7%(3명), 행정자치위원회 11.1%(2명), 농수축경제위원회 11.1%(2명), 교육위원회 11.1%(2명), 환경도시위원회 5.6%(1명)로 나타났다.

<표 IV-8> 최초 배정된 상임위원회

구분	빈도(명)	비율(%)
행정자치위원회	2	11.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8	44.4
환경도시위원회	1	5.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	16.7
농수축경제위원회	2	11.1
교육위원회	2	11.1
계	18	100.0

2)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 공정 여부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배정된 상임위원회에 배정 방식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66.7%(12명)가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3.3%(6명)는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이 공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IV-9>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 공정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배정 방식이 공정하였다	6	33.3
배정 방식이 공정하지 않았다	12	66.7
계	18	100.0

2-1)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 불공정 이유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12명을 대상으로 불공정 이유에 대해 여성의원으로서의 차별, 비례대표로서의 차별, 남성중심 의회 운영에 대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 불공정 이유

- 각 의원의 상임위 신청서는 받고 있으나, 배정과 관련한 논의에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 부족
- 비례대표에 대한 차별이 있음
- 의장선거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음
- 여성에 대한 차별
- 비례대표로서 기피상임위 배정
- 재선의원 중심으로 배정, 초선의원 배제
- 남성의원 중심 배정
- 지역구 의원 상임위 배정 후 비례대표 배정

2-2) 희망 상임위원회 여부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12명 중 희망 상임위원회 질문

에 응답한 10명의 희망 상임위원회 부문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40%(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명), 농수축경제위원회 20%(2명), 행정자치위원회 10%(1명), 교육위원회 10%(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 불공정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행정자치위원회	1	10.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	40.0
환경도시위원회	-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	20.0
농수축경제위원회	2	20.0
교육위원회	1	10.0
계	10	100.0

2-3) 희망 상임위원회 배정 이유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12명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원회 배정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전문 분야로 실효성 높은 정책활동을 위해서라는 의견과 취학 연령 자녀 등 아이들의 학교 교육제도 변화를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희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2> 희망 상임위원회 배정 이유

- 전문 분야로 실효성 높은 정책활동을 위해서
- 취학 연령 자녀 등 아이들의 학교 교육제도 변화를 위해

3) 의정 활동 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분야 여부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 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분야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38.9%(7명)가 주민 의견수렴 활동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도정 질의 및 감사활동 33.3%(6명), 조례 제·개정 16.7%(3명), 예산 심의 활동 5.6%(1명), 행정서비스 개선 활동 5.6%(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의정 활동 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분야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조례 제·개정	3	16.7
예산 심의 활동	1	5.6
도정 질의 및 감사활동	6	33.3
주민 의견수렴 활동	7	38.9
행정서비스 개선활동	1	5.6
계	18	100.0

4) 의정 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노력 여부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남성의원보다 의정 활동 시 노력에 대한 질문에 조례 제·개정 등 입법 기능에 대해서는 94.5%(17명)가 의회 입법기능 부문에 대해 남성의원보다 더 노력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예·결산 심의 기능 부문 또한 94.5%(17명)가 남성의원보다 더 노력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행정사무감사 부문의 경우 94.5%(17명)가 남성의원보다 더 노력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정질의 부문의 경우 94.4%(18명)가 남성의원보다 더 노력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정기적인 주민의견 청취 부문의 경우 50%(9명)가 남성의원보다 더 노력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50%(9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주민 갈등 조정 부문은 55.5%(10명)가 갈등 조정을 위해 남성의원보다 더 노력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5.6%(1명)는 남성의원보다 노력하지 못하였고, 38.9%(7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부문은 66.6%(12명)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남성의원보다 더 노력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11.1%(2명)는 남성의원보다 노력하지 못하였고, 22.2%(4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행정서비스 개선 부문은 44.4%(8명)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남성의원보다 더 노력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5.6%(1명)는 남성의원보다 노력하지 못하였고, 50%(9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14> 의정 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노력 여부

구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매우 높다	계	평균
조례 제·개정 등 입법기능	0 (0.0%)	0 (0.0%)	1 (5.6%)	10 (55.6%)	7 (38.9%)	18 (100%)	4.33
예·결산 심의	0 (0.0%)	0 (0.0%)	1 (5.6%)	10 (55.6%)	7 (38.9%)	18 (100%)	4.33
행정사무감사	0 (0.0%)	0 (0.0%)	1 (5.6%)	8 (44.4%)	9 (50%)	18 (100%)	4.44
도정 질의	0 (0.0%)	0 (0.0%)	3 (16.7%)	6 (33.3%)	9 (50%)	18 (100%)	4.33
정기적 주민의견 청취	0 (0.0%)	0 (0.0%)	9 (50%)	5 (27.8%)	4 (22.2%)	18 (100%)	3.72
지역 주민 갈등조정	0 (0.0%)	1 (5.6%)	7 (38.9%)	6 (33.3%)	4 (22.2%)	18 (100%)	3.72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	0 (0.0%)	2 (11.1%)	4 (22.2%)	6 (33.3%)	6 (33.3%)	18 (100%)	3.88
행정서비스 개선	0 (0.0%)	1 (5.6%)	9 (50%)	6 (33.3%)	2 (11.1%)	18 (100%)	3.50

5) 의정 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높은 성과 여부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남성의원보다 의정 활동 시 성과에 대한 질문에 조례 제·개정 등 입법 기능에 대해서는 88.9%(16명)이 입법기능에 대해 남성의원보다 성과가 높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예·결산 심의 기능 부문은 83.3%(15명)가 심의 기능에 대해 남성의원보다 성과가 높았다고 응답하였다. 행정사무감사 부문은 72.2%(13명)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남성의원보다 성과가 높았다고 응답하였으며, 11.1%(2명)는 남성보다 성과가 낮았고 16.7%(3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도정질의 부문은 72.2%(13명)가 도정질의에 대해 남성의원보다 성과가 높았다고 응답하였다. 정기적 주민의견 청취 부문은 55.5%(10명)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 남성의원보다 성과가 높았다고 응답하였으며, 5.6%(1명)는 남성보다 성과가 낮았고 38.9%(7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 주민 갈등 조정 부문

은 50%(9명)가 갈등 조정에 대해 남성의원보다 성과가 높았다고 응답하였으며, 5.6%(1명)는 남성보다 성과가 낮았고 44.4%(8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 부문은 66.6%(12명)가 숙원사업에 대해 남성의원보다 성과가 높았다고 응답하였으며, 11.1%(2명)는 남성보다 성과가 낮았고 22.2%(4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행정서비스 개선 부문은 44.5%(8명)가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 남성의원보다 성과가 높았다고 응답하였으며, 5.6%(1명)는 남성보다 성과가 낮았고 50%(9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15> 의정 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높은 성과 여부

구분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계	평균
조례 제·개정 등 입법기능	0 (0.0%)	0 (0.0%)	2 (11.1%)	10 (55.6%)	6 (33.3%)	18 (100%)	4.22
예·결산 심의	0 (0.0%)	0 (0.0%)	3 (16.7%)	8 (44.4%)	7 (38.9%)	18 (100%)	4.22
행정사무감사	0 (0.0%)	2 (11.1%)	3 (16.7%)	8 (44.4%)	5 (27.8%)	18 (100%)	3.88
도정 질의	0 (0.0%)	0 (0.0%)	5 (27.8%)	6 (33.3%)	7 (38.9%)	18 (100%)	4.11
정기적 주민의견 청취	0 (0.0%)	1 (5.6%)	7 (38.9%)	6 (33.3%)	4 (22.2%)	18 (100%)	3.72
지역 주민 갈등조정	0 (0.0%)	1 (5.6%)	8 (44.4%)	5 (27.8%)	4 (22.2%)	18 (100%)	3.66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	0 (0.0%)	2 (11.1%)	4 (22.2%)	6 (33.3%)	6 (33.3%)	18 (100%)	3.88
행정서비스 개선	0 (0.0%)	1 (5.6%)	9 (50%)	5 (27.8%)	3 (16.7%)	18 (100%)	3.55

6) 의정 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여성의원(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여부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 꼼꼼한 지역 현안 발굴을 통한 입법활동 부문은 83.3%(15명)가 남

성의원보다 강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세심한 이미지로 주민들과의 접촉 용이 부문은 88.9%(16명)가 남성의원보다 강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집행기관과의 정책협력 부문은 77.8%(14명)가 남성의원보다 강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 부문은 27.8%(5명)가 남성의원보다 강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문위원과의 정책협력 부문은 66.6%(12명)가 남성의원보다 강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정책자문위원과의 정책 협력 부문은 88.9%(16명)가 남성의원보다 강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사무처 직원과의 소통 강화 부문은 83.3%(15명)가 남성의원보다 강점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16> 의정 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여성의원(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여부

구분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계	평균
꼼꼼한 지역 현안 발굴을 통한 입법활동	0 (0.0%)	1 (5.6%)	2 (11.1%)	11 (61.1)	4 (22.2%)	18 (100%)	4.00
세심한 이미지로 주민들과의 접촉 용이	0 (0.0%)	1 (5.6%)	1 (5.6%)	11 (61.1)	5 (27.8%)	18 (100%)	4.11
집행기관과의 정책협력	0 (0.0%)	0 (0.0%)	4 (22.2%)	11 (61.1)	3 (16.7%)	18 (100%)	3.94
언론과의 소통 강화	0 (0.0%)	2 (11.1%)	11 (61.1)	4 (22.2%)	1 (5.6%)	18 (100%)	3.22
전문위원과의 정책 협력	0 (0.0%)	1 (5.6%)	5 (27.8%)	6 (33.3%)	6 (33.3%)	18 (100%)	3.94
정책자문위원과의 정책 협력	0 (0.0%)	0 (0.0%)	2 (11.1%)	7 (38.9%)	9 (50%)	18 (100%)	4.38
사무처 직원과의 소통 강화	0 (0.0%)	1 (5.6%)	2 (11.1%)	9 (50%)	6 (33.3%)	18 (100%)	4.11

7) 의정 활동 시 남성의원 보다 여성의원 강화 사항 여부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여성의원의 강화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성의원 전문성 강화 부문은 88.8%(16명)가 전문성 강화가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의원 정책 보좌기능(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강화 부문은 83.3%(15명)가 여성의원 정책보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통제 및 감시 부문은 50%(9명)가 도민의 통제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7> 의정 활동 시 남성의원 보다 여성의원 강화 사항 여부

구분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평균
여성의원 전문성 강화	0 (0.0%)	1 (5.6%)	1 (5.6%)	8 (44.4%)	8 (44.4%)	18 (100%)	4.27
여성의원 정책 보좌기능(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강화	0 (0.0%)	1 (5.6%)	2 (11.1%)	10 (55.6%)	5 (27.8%)	18 (100%)	4.05
도민들의 적극적인 통제 및 감시	0 (0.0%)	0 (0.0%)	9 (50%)	6 (33.3%)	3 (16.7%)	18 (100%)	3.66

4. 여성 정치참여 관련

1) 여성의원 증가 정치발전 기여 여부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의회에 여성의원의 증가가 정치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00%(18명)가 의회 여성의원 증가가 정치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8> 여성의원 증가 정치발전 기여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17	94.4
그렇다	1	5.6
보통이다	-	-
그렇지 않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계	18	100.0

2) 여성의원 증가 긍정적인 이유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여성의원 증가가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깨끗한 정치를 할 거 같아서와 남성중심 정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거 같아서 응답이 각각 27.8%(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구 문제를 세심하게 챙길 거 같아서 22.2%(4명), 주민과의 소통·공감을 잘할 거 같아서 5.6%(1명)로 나타났다.

<표 IV-19> 여성의원 증가 긍정적인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깨끗한 정치를 할 거 같아서	5	27.8
지역구 문제를 세심하게 챙길 거 같아서	4	22.2
소외 계층 및 여성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거 같아서	3	16.7
주민과의 소통·공감을 잘할 거 같아서	1	5.6
남성중심 정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거 같아서	5	27.8
계	18	100.0

3) 여성 정치참여 저해 요인(복수응답)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복수응답 질문에 25%(16명)가 여성의 사회적 지지기반 부족이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치는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온 보수적인 사회문화 20.3%(13명), 선거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20.3%(13명), 여성 본인의 적극적인 도전의식 부족 18.8%(12명), 정당 내에서의 취약한 여성의 지위 15.6%(13명)로 나타났다.

<표 IV-20> 여성 정치참여 저해 요인(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여성 본인의 적극적인 도전의식 부족	12	18.8
여성의 사회적 지지기반 부족	16	25.0
정치는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온 보수적인 사회문화	13	20.3
정당 내에서의 취약한 여성의 지위	10	15.6
선거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13	20.3
계	64	100.0

4)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요구사항(복수응답)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복수응답 질문에 적극적인 도전의식과 사회적 지지기반이 각각 26.9%(1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능력 23.1%(12명), 차별화된 정책과 공약 15.4%(8명), 적극적 홍보활동 7.7%(4명)로 나타났다.

<표 IV-21>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요구사항(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적극적인 도전의식	14	26.9
사회적 지지기반	14	26.9
경제적 능력	12	23.1
차별화된 정책과 공약	8	15.4
적극적 홍보활동	4	7.7
계	52	100.0

5) 여성 할당제 강화 여부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에 비례대표 및 지역구 후보자 공천 시 여성 할당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00%(18명)가 비례대표 및 지역구 후보자 공천 시 여성 할당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

하였다.

<표 IV-22> 여성 할당제 강화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11	61.1
그렇다	7	38.9
보통이다	-	-
그렇지 않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계	18	100.0

6)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화 동의 여부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화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00%(18명)가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화에 동의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3>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화 동의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15	83.3
그렇다	3	16.7
보통이다	-	-
그렇지 않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계	18	100.0

7) 지방의회 남녀 동수 동의 여부

전체 응답자 18명을 대상으로 ‘대의민주주의 성공을 위해 지방의회 남녀 동수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88.9%(16명)가 남녀 동수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1.1%(2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24> 지방의회 남녀 동수 동의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7	38.9
그렇다	9	50.0
보통이다	2	11.1
그렇지 않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	-
계	18	100.0

V.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991년 지방자치체 실시 28여년 흐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분리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집행기관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분권시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 의정활동 역량 수준을 살펴보고 여성의원 의정활동의 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성의원과 여성원의 의정활동을 비교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 중심으로 각 요인 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8대·9대·10대 의회 조례안 대표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8대의 경우 조례안 발의 건수는 전체 150건으로 이 중 남성의원 134건, 여성의원 16건으로 나타났다, 남성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는 3.7건이며, 여성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는 3건으로 나타났다. 제9대의 경우 발의 건수는 전체 238건으로 이 중 남성의원 209건, 여성의원 29건으로 나타났다, 남성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는 5.8건이며, 여성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도 5.8건으로 나타났다. 제10대의 경우 조례안 발의 건수는 전체 164건으로 이 중 남성의원 96건, 여성의원 68건으로 나타났다, 남성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는 4.4건이며, 여성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는 9.7건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원을 대상으로 정치입문 동기, 의정활동 사항, 여성 정치참여 사항에 대해 설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회 진출 전 정치활동 경험 유무에 대해 67.3%(12명)가 의회 진출 전 정치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활동 유형으로는 주로 정당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방정치 입문 동기로는 83.3%(15명)가 지방정치 입문 동기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입문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지방정치 활동 결심 후 가장 먼저 준비한 사항으로는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였다고 나타났다. 지방정

치 활동 권유자 38.9%(7명)가 지방정치 활동 권유를 정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원의 최초 배정된 상임위원회는 44.4%(8명)가 최초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 공정 여부에 대해서는 66.7%(12명)가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 불공정 이유로는 여성의원로서의 차별, 비례대표로서의 차별, 남성중심 의회 운영에 대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상임위원회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40%(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유로는 전문 분야로 실효성 높은 정책활동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의정 활동 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분야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 활동을 가장 우선에 두었다고 나타났으며, 의정활동시 남성의원보다 노력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 등 입법기능(평균 4.33점), 예·결산 심의(평균 4.33점), 행정사무감사(평균 4.44점), 도정 질의(평균 4.33점), 정기적 주민의견 청취(평균 3.72점), 지역 주민 갈등조정(평균 3.72점),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평균 3.88점), 행정서비스 개선(평균 3.5점)으로 의정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노력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의정 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높은 성과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 등 입법기능(평균 4.22점), 예·결산 심의(평균 4.22점), 행정사무감사(평균 3.88점), 도정 질의(평균 4.11점), 정기적 주민의견 청취(평균 3.72점), 지역 주민 갈등조정(평균 3.66점),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평균 3.88점), 행정서비스 개선(평균 3.55점)으로 의정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성과가 높았다고 응답하였다.

의정 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여성의원(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는 꼼꼼한 지역 현안 발굴을 통한 입법활동(평균 4점), 세심한 이미지로 주민들과의 접촉 용이(평균 4.11점), 집행기관과의 정책협력(평균 3.94점), 언론과의 소통 강화(평균 3.22점), 전문위원과의 정책 협력(평균 3.94점), 정책자문위원과의 정책 협력(평균 4.38점), 사무처 직원과의 소통 강화(평균 4.11점)으로 응답하였다.

의정활동 시 남성의원보다 여성의원 강화 사항에 대해서 여성의원 전문성 강화(4.27점), 여성의원 정책 보좌기능(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강화(평균 4.05점), 도민들의 적극적인 통제 및 감시(평균 3.66점)으로 응답하였다.

여성의원 증가 정치발전 기여도에 대해 100%(18명)가 의회 여성의원 증가가

정치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원 증가가 긍정적인 이유는 깨끗한 정치를 할 거 같아서와 남성중심 정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거 같아서 응답이 각각 27.8%(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 정치참여 저해 요인으로서는 25%(16명)가 여성의 사회적 지지기반 부족이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요구사항으로 적극적인 도전의식과 사회적 지지기반이 필요하다고 각각 26.9%(14명)로 나타났다. 여성 할당제 강화 여부에 대해 100%(18명)가 비례대표 및 지역구 후보자 공천 시 여성 할당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화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100%(18명)가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화에 동의 한다고 응답하였다.

지방의회 남녀 동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88.9%(16명)가 남녀 동수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제 2 절 시사점

1. 여성의 참여 조직화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확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살림살이에 주체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하향적인 결정체제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것이다. 지방분권화의 의미 역시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그들의 생활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인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살림을 만들어 가려는 실천을 직접 해 보이는 과정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 주민들의 실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지역살림은 가정살림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지역살림에 밝은 사람은 현재까지 가사를 전담해오고 있는 여성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에게만 가정을 맡기는 성역할 고정화, 분업화는 분명 바뀌어야 하지만 당장의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여성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여성에게 강조되어온 사회적 역할론 상 생활정치적의 대표적인 역할에 여성이 적합한 측면이 있으며 의정활동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의 대표성이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정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위 여성들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살림꾼’ 으로서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상호절충의 능력, 세밀함과 친화력 등이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정치발전에 발휘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성공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2. 여성단체 역할 필요

제주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나 여성단체 등의 분야에 회원이나 자원봉사 활동은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낮고 참여계층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자원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젠더적 의식을 가지고 지도력을 키워나가는 실천의 장으로서의 여성단체의 역할은 몹시 중요하다.

회원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많은 사회문제의 이론과 실재를 경험하면서 해결의 능력을 키우게 된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자신의 전문지식을 실천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전문성을 축적하고 함께 활동하는 사람,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여성단체들은 많은 여성들이 선거 때마다 올바른 여성정책의 실현 또는 유권자 교육, 여성후보를 위한 선거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3. 정당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확보

정당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형성된 당원들의 결사체이다. 정당의 정강정책을 익히고 교육하며 선거의 실천경험들을 통하여 정치지도자를 육성해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여성의 참여는 현격히 떨어진다. 보통 소

수집단이 그들이 속한 전체집단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30%의 임계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위원장, 도당위원장, 상무위원, 각 위원회 구조에 여성의 참여와 할당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여성의 당내 대표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내 공천인 경우에도 여성가산점 부여 등 점차 여성의 경선에 적용되는 운영 방식들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으나 지역구 공천에 30%의 무화 등을 법제화 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후보의 경쟁력 등의 이유로 여성공천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런 시도들이 없이는 여성의 장점이나 여성의 문제 등이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한 각 정당에 소속된 여성위원회 등의 일상 활동을 강화시켜 여성정책, 정당 정치의 역사, 정강정책 그 외의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정치아카데미 교육 등 일상적인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여성당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하고 여성후보 발굴, 여성정치지도자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당내 여성의 지위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당원을 조직, 여성단체들과의 연대, 각지역위별 여성위원회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4. 여성의원들의 역할의 중요성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성의원들에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지역운동가로서 기반을 다진 여성의원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할 뿐 아니라 지역운동으로 전개되어온 활동과제들을 지방의회 활동과 연계하여 대처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방의회의 여성의원과 남성의원의 활동들을 비교해본 결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훨씬 더 적극적인 사고를 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주민과 접촉하는 여러 방식 중에서 여성의원은 주민과의 대화모임을 선호하는 반면에 남성의원은

경조사의 참석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여성의원은 주민과의 관계에서 형식적, 관례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친밀한 접근에 주력하고 대체로 주민의 요구에 보다 직접적으로 귀를 기울이려는 태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의원들의 활동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기고, TV 토론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sns서포터즈단의 활동, 개인 미디어 활용 등 새로운 방식등도 도입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야 한다.

여성의원과 후보 지방생, 젊은 예비정치인들 간의 교류와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의정활동의 경험이 제대로 축적되고 기록되며 여성정치인들이 제대로 현실정치에 뛰어 들 수 있도록 제도화, 입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지방자치론, 법문사, 김병준, 2010.
-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이기우, 1995.
- 최명규(2010), “지방의회 출범 20주년 회고” 자치의정(사단법인 지방의회 발전 연구원) 1월·2월 (통권 70호)
- 대한민국 헌법(198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공직선거법(201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545>
- 장흥군의회 홈페이지 의회기능 <http://www.jhc.go.kr>
- 비교정치론 : 이론·대상·사례, 법문사 2000. 신정현
- 곽형대(2006) 여성 할당제 도입과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확대,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애(1998), “여성의 정치세력화 지방자치: 참여확대를 중심으로” [98국제심포지엄, 아시아지방자치발전과 여성의 정치세력화], 자료집.
- 김민정(2004), “여성리더쉽: 대안적 리더쉽” [아주대학교 여성리더쉽센터, 2006 지방자치 여성후보 양성과정 자료집]. 2004.
- Myron Weiner(1971), “Political Participation”, Leonard Binder. et al. Crises and Sepuence in Political Developement, Princeton univ. Press. 1971.
- Sidney Verda and Norman H, Nie(1978), [participation and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ark : Harper and Row,1978.
- 국애영(2006) [5.13 지방선거와 여성정치 발전방향],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거버넌스학회.

- 최종두(1985), 민주정치와 선거로, 태창출판사.
- 임현주(2000)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선진(2006), 한국여성의 국회의원선거 참여 : 저해요인과 확대방안.
- 박의경(2014) 여성의 정치사상, 책세상
- 백경남(1997)“여성 정치 참여동의를의 역사” [여성과 정치Ⅱ], 한국정치문화연구소.
- 한국여성개발원 보고서(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 여성발전기본법(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전학선(2010),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당공천 여성할당제와 남녀평등,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16(2), pp.409-434.
- 박선영(2007), 여성의 지방의회 차명 실체와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2005), 프랑스여성과 정치, 그리고 동수법제정,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13집.
- 전경옥(2008), 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성정책 비교연구- 정치,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연구소.
- [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2부·7) 선진국, 女정치할당제 현황은, 파이낸셜뉴스, 2014.05.27. <http://www.fnnews.com/news/201405271713150658>
- 독일 여성제도, 여성신문, 2008.11.07.
- 허강숙(2009), 여성의원비율증가가 생활정치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전라남도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경여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경호(2015), 정당공천제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미치는 영향 분석-지방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1999),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영·조정례(2013), 지방의회 여성의원이 여성친화적 정책도입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3호 pp.289-316.

김중희(2010), 여성의 지방정치 진출에 관한 연구-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특별시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정화(2014),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2002) “프랑스-제도적인 노력과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각국의 정책], 서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pp.14-17.

박선영(2007),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실태와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to strengthen legislative activities of female members of Jeju Provincial Assembly - focusing on Jeju Provincial Assembly

28 years has been passed since the execu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in 1991. Local autonomy system has the significant meanings to solve the people's daily living problems beyond the politics with power concept and to provide the transition opportunity to enhance the individual quality of lif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panels of legislative bodies in the local governments, play significant roles as one part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system such as checking and monitoring the execution bodies, legislating ordinances that assemblies of local governments decide on the administrative works of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boundary of legislations.

Jeju Province was initiated a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n July 1, 2006, and its authorities and importance have been enhanced a lot compared to other metropolitan assemblies. However, women's participations may be low compared to its importance.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female members in the Jeju provincial assembly so as to suggest the enhancement plans of their legislative activities.

First, upon the analysis results of legislative activities between male and female members, the numbers of ordinance motions in male and female members were 3.7 vs 3 times; 5.8 vs 5.8 times; and 4.4 vs 9.7 times, in the 8th to 10th period of assemblies, respectively, showing the increase of female members' motions, since the found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in the subjects with female members on

the reasons to start politics, items of legislative activities, and women's participations in politics. 83.3% (15 persons) of women assembly members answered to serve the community as their reason to start the politics, and to get consent from the families was the first thing that they prepared after determination of local governmental activities. With respect to the allocation methods of standing committees, 66.7% (12 persons) of them replied the methods were not fair. For the efforts on the legislation activities by gender, they answered they did a lot such as legislative functions including ordinance enactments and amendments (4.33 points on average) and budget review (4.33 points on average). Regarding higher performance than male assembly members, they replied to show higher performances in legislative functions including ordinance enactments and amendments (4.22 points on average) and budget review (4.22 points on average).

For the competitive advantages as female members, they rated legislative activities by the detailed developments of local issues (4 points on average), easy access to the inhabitants with careful images (4.11 points on average), and so on.

The implications of strengthening plans on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female members are as follows; First, systemization of women's participations is required to enhance the social perception how important women's working for their families as well as communities are in the development of politics for public interests. Second, strengthening roles of women groups are required to be able to realize proper policies for women, educate voters, or participate in volunteering activities of elections for women candidates in the elections. Third, securing women's status is required to secure the representation within the political parties upon active participations and allocations of women. Fourth, the plans to strengthen women's activities are required to accumulate and record the experiences of legislation activities properly, and to participate in the real-life politics upon strengthening the exchanges and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mong female assembly members, candidates, and preliminary young politicians.

Key words: Jeju Provincial Assembly, Female Member of Provincial Assembly, Legislative Activity, Women's Status, Collaborative Network

ID

제주지역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방안 연구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제주지역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제주지역 여성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귀하의 인
식을 파악하고자 위한 것이며, 설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읽고 느
끼시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귀중한 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지도교수: 양 덕 순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연구자: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오욱만(jejubari@naver.com)

연락처: 010-2521-0723

의원전·현직님의 정치 입문동기 관련입니다 생각하시는 항목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원(전·현직)님께서 의회 진출 전 정치활동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정치활동 경험이 없다(☞문2번으로 이동)
- ② 정치활동 경험이 있다(☞문1-1번으로 이동)

1-1. 의원(전·현직)님께서 정치활동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

2. 의원(전·현직)님께서 지방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 ②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하여
- ③ 향후 중앙 정계로 진출하기 위하여
- ④ 남녀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 ⑤ 기타()

3. 의원(전·현직)님께서 지방정치(지역구, 비례대표) 활동을 결심하고 난 후 가장 먼저 준비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일
- ② 기탁금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일
- ③ 자원봉사 등 선거운동원을 확보하는 일
- ④ 지역구 파악 및 정책 개발
- ⑤ 기타()

4. 의원(전·현직)님께서 지방정치(지역구, 비례대표) 활동을 누구로부터 많은 권유를 받으셨습니까?

- ① 스스로 결심
- ② 가족
- ③ 친구
- ④ 정당
- ⑤ 이웃 주민
- ⑥ 시민사회단체
- ⑦ 여성단체
- ⑧ 기타()

의원(전·현직)님의 의정활동 관련입니다. 생각하시는 항목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원(전·현직)님께서 최초 배정된 상임위원회는 어디입니까?

- ① 행정자치위원회
- ②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③ 환경도시위원회
- ④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⑤ 농수축경제위원회
- ⑥ 교육위원회

6. 의원(전·현직)님께서 배정된 상임위원회에 배정 방식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배정 방식이 공정하였다(☞문8번으로 이동)
- ② 배정 방식이 공정하지 않았다(☞문7-1, 7-2번으로 이동)

6-1.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공정 이유 :

6-2. 희망하신 상임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망 상임위원회 :

희망 이유 :

7. 의원(전·현직)님께서 의정 활동 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조례 제·개정
- ② 예삼 심의 활동
- ③ 도정 질의 및 감사활동
- ④ 주민 의견수렴 활동
- ⑤ 행정서비스 개선활동

8. 의원(전·현직)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의정 활동 시 각 분야에 대해 남성 의원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조례 제·개정 등 입법기능	①	②	③	④	⑤
예·결산 심의	①	②	③	④	⑤
행정사무감사	①	②	③	④	⑤
도정 질의	①	②	③	④	⑤
정기적 주민의견 청취	①	②	③	④	⑤
지역 주민 갈등조정	①	②	③	④	⑤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	①	②	③	④	⑤
행정서비스 개선	①	②	③	④	⑤

9. 의원(전·현직)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의정 활동 시 각 분야에 대해 남성 의원들보다 성과가 더 높으셨습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조례 제·개정 등 입법기능	①	②	③	④	⑤
예·결산 심의	①	②	③	④	⑤
행정사무감사	①	②	③	④	⑤
도정 질의	①	②	③	④	⑤
정기적 주민의견 청취	①	②	③	④	⑤
지역 주민 갈등조정	①	②	③	④	⑤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	①	②	③	④	⑤
행정서비스 개선	①	②	③	④	⑤

10. 의원(전·현직)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의정 활동 시 각 분야에 대해 남성 의원들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꼼꼼한 지역 현안 발굴을 통한 입법활동	①	②	③	④	⑤
세심한 이미지로 주민들과의 접촉 용이	①	②	③	④	⑤
집행기관과의 정책협력	①	②	③	④	⑤
언론과의 소통 강화	①	②	③	④	⑤
전문위원과의 정책 협력	①	②	③	④	⑤
정책자문위원과의 정책 협력	①	②	③	④	⑤
사무처 직원과의 소통 강화	①	②	③	④	⑤

11. 의원(전·현직)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해 중요한 사항은 무엇
입니까?

구분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여성의원 전문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여성의원 정책 보좌기능(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도민들의 적극적인 통제 및 감시	①	②	③	④	⑤

여성의 정치참여 관련입니다 생각하시는 항목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의원(전·현직)님께서는 의회에 여성의원의 증가가 정치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문10-1번으로 이동)
- ② 그렇다(☞문10-1번으로 이동)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1. 의원(전·현직)님께서는 여성의원 증가가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깨끗한 정치를 할 거 같아서
- ② 지역구 문제를 세심하게 챙길 거 같아서
- ③ 소외 계층 및 여성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거 같아서
- ④ 주민과의 소통·공감을 잘할 거 같아서
- ⑤ 남성중심 정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거 같아서

**13. 의원(전·현직)님께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 모두 체크바랍니다)**

- ① 여성 본인의 적극적인 도전의식 부족()
- ② 여성의 사회적 지지기반 부족()
- ③ 정치는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온 보수적인 사회문화()
- ④ 정당 내에서의 취약한 여성의 지위()
- ⑤ 선거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14. 의원(전·현직)님께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 모두 체크바랍니다)

- ① 적극적인 도전의식()
- ② 사회적 지지기반()
- ③ 경제적 능력()
- ④ 차별화된 정책과 공약()
- ⑤ 적극적 홍보활동()

15. 의원(전·현직)님께서는 지방선거에 비례대표 및 지역구 후보자 공천 시 여성 할당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6. 의원(전·현직)님께서는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화에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7. 의원(전·현직)님께서는 대의민주주의 성공을 위해 지방의회 남녀 동수 주장에 대해 동의
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적 사항입니다 항목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연령 : [만 세]

Q2. 선수 : ① 초선 ② 재선

Q3. 출신유형 : ① 지역구 출신 ② 비례대표 출신

Q4. 소속 정당 : []

Q5. 최종학력 : ① 대졸 ② 대학원 이상

Q6. 전·현직 : ① 전직의원 ② 현직의원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